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일시 | 2021. 6. 28.(월) 14:00 ~ 16:30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 약자의 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내용 발표

-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

지정토론

■ 좌장 | 김삼섭 석좌교수(중부대학교)

교원단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은경 특수교육위원장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광윤 정책실장

학부모단체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조경미 간사
-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정순경 회장

장애인단체

- 장애인학생인권네트워크 이현영 운영위원

학계

- 한국특수교육학회 전병운 회장(공주대 교수)

정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선미 과장

법률 전문가

- 사단법인두루 이주언 변호사

유튜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와 함께해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화 02-723-4804

팩스 02-723-4805

이메일 jbumo@hanmail.net

홈페이지 www.bumo.or.kr

* 이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됩니다.

Contents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인사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발제 1

-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제안 설명 1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 토론

전병운 회장 (특수교육학회, 공주대학교 교수)	101
이은경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113
정광윤 정책실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123
정순경 회장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131
조경미 간사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137
이현영 운영위원 (장애학생인권네트워크)	145
이주언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57

Program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1. 목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2. 개요

- 일시: 2021. 6. 28.(월) 14:00 ~ 16:30
- 방식: 실시간 온라인 토론회(유튜브)
※ 유튜브를 통한 공개 방송 형태로 별도의 로그인 또는 접속 아이디 필요 없음
- 참석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특수교육 관련 기관·단체 회원 중 온라인 참석
희망자
- 주최: 국회의원 조승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회 약자의 눈

3. 주요 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내용 발표
- 지정토론 및 종합 토론
※ 온라인 토론회임을 감안하여 실시간 댓글(질의) 게시판 활용

Program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4. 세부 일정

시 정	시량(분)	내 용
14:00~14: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식<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소개/일정안내- 주최 단체 인사말· 조승래 의원· 윤종술 대표
14:05~14:25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제 :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제안 설명· 발표자 김기룡(중부대학교 교수)
14:25~15:45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토론><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 김삼섭(중부대학교 석좌교수)· 토론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병운 회장(특수교육학회, 공주대학교 교수)- 이은경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정광윤 정책실장(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정순경 회장(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조경미 간사(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이현영 운영위원 장애학생인권네트워크-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김선미 과장(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등
15:45~16:30	45	종합토론
16:30		폐회

※ 토론자는 섭외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5. 참가 방법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채널 접속 후 주요채팅 창에 질문 작성
(<https://youtube.com/channel/UCPnymvh2RzZvj8M-sxYOz8g>)
- 문의 :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담당 조경미 ☎ (02)723-4804

인사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여러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저와 부모연대가 함께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을 맞아 특수교육법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18년, 2020년 2차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오늘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모쪼록 오늘, 그동안 연구를 통해 제안된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장애 학생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저 또한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8일

국회의원 조승래

인사말

윤종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국의 부모님들과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발달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법 개정에 함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공동주최 해주신 조승래 국회의원님과 국회 약자의 눈 김민석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년 전, 2003년 7월 15일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전신인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출범한 날입니다. 당시 전국의 교사단체, 장애인단체, 부모조직이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 투쟁으로 2007년 4월 장애학생을 위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통합교육환경 구축, 특수교육시설 신설과 증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시행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재 장애학생이 교육환경은 물리적인 통합교육에서 한결음도 나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무상교육, 의무교육으로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교육받고 있는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장애 중경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고, 통합교육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도,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이자,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목격자로서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이 활동이 올해는 꼭 전면개정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전면개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발걸음이 모여 이번에는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과 함께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8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윤종술**



발제 1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제안 설명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제안 설명

김기룡 교수(중부대학교)

I. 개정안 제안 배경

○ 기존 특수교육법의 성과 및 한계

- 지난 2008년 전부 개정·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의무교육 연한 및 무상교육 범위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신설,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증진하고,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특수교육교원 확충 등 장애학생의 물리적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김원경 외, 2010; 김종무, 2017; 김기룡 외, 2020)
 - 지난 10여년간 장애학생 교육 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연한 확대: 기준(2008년 이전) 6세 ~ 14세 → 변경(2008년 이후) 3세 ~ 17세
 -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 43.8%(2008년) → 75.1%(2020년)
 -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신설: 가족지원, 치료지원, 통학지원,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보조기기 제공 등
 -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특수학급 6,352학급(2008년) → 11,661학급(2020년)
특수학교 149개교(2008년) → 182개교(2020년)
 - * 특수교육교원 확충: 13,165명(2008년) → 22,145명(2020년)
 - * 공립의 각급학교 배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법정정원 확보율: 56.5%(2010년) → 86.8%(2019년)
- 현행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양적 성장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으나,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 성과 제고,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 해소, 장애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는 부족하였다고 평가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학률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취업률은 크게 하락하는 등 고교 졸업 이후 미진학·미취업 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교육부, 2009, 2019)
 - * 고교 졸업자 중 취업률: 2008년 26.6% → 2018년 11.0%
 - * 고교 졸업자 중 진학률: 2008년 44.8% → 2018년 49.3%
 - * 고교 졸업자 중 미취업 또는 미진학 비율: 2008년 28.6% → 2018년 39.7%
 -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장애차별 등의 문제 지속적 발생
 - * 통합교육 현장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 초·중·고 과정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59.2%가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경험
 - * 유아교육기관 장애영유아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5): 전체 장애영유아의 23.5%가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

별 경험

- * 특수학교 내 중도·중복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8): 특수학교 재학 중도중복장애학생의 52.9%가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 경험
- * 2018년 특수학교 3개교 등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교육부 차원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 발표
- 통합교육에 대한 학교구성원간 만족도 격차 심화(교육부, 2009. 2018)
- * 통합교육 만족도(2008년): 보호자 53.1%, 교사 43.4%
- * 통합교육 만족도(2017년): 보호자 58.3%, 교사 68.8%

- 특수교육법은 지난 10년 동안 특수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는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의미있게 활용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면 현행 특수교육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법 제·개정의 필요성 시사

○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제기

- 특수교육법 관련 선행연구에서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지속적으로 제기
 - 법률의 제명 검토 필요(정용석, 2019; 한현민, 김의정, 2008), 주요 특수교육 관련 용어 수정 필요(이상복, 2008), 의무교육 생활 사항 고려 의무교육 관련 규정 정비 필요(김윤태, 2008; 박창언, 강영심, 김원경, 2010), 특수교육 교육과정 관련 법령 정비 필요(박창언, 2011)
 - 진단평가 절차에 대한 구체화(김혜령, 2013; 윤수정, 2018), 개별화교육계획 관련 내용 정비 필요(김윤실, 김남순, 2008), 치료지원 관련 규정 정비 필요(이병희, 정진화, 2009),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의무 관련 규정 정비 필요(차성안, 2009)
 - 특수학교의 교사 배치 기준 문제(김용욱 외, 2009; 김원경, 한현민, 2009; 박주미, 김재웅, 2013), 통합교육의 운영 문제(류재연, 2013), 교육과정 운영 문제(박창언, 2011) 등 제기
- 장애인 당사자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의 개정 요구
 -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 추진 관련 사건 이후, 국회 차원의 특수학교 설립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입법 추진(2018 ~ 현재), 개발지역에 특수학교 부지 마련 특례법 제·개정 추진 등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도중복장애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요구(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토론회)
 -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의 교육 지원 확대 관련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법률 개정 요구
 - 대학 장애학생의 대학 내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요구
- 법률 체계 정비 등 법률 전문가에 의한 개정 요구(김기룡 외, 2020)
 - 유사 내용을 법률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사례: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보조인력)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이 배치하여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책임자에게 배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인력 배치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 체계 정비 필요
 - 위임하지 않은 규제 사항을 하위법령에 입법한 사례: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자는 국가에 대하여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국가(시도교육청)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관련 입법 불가피

- 하위법령에서 법률의 위임 범위 일탈 사례: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의 장은 특별지원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의무조항). 그러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재학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이면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완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하위법령 규정

- 최근 발의된 다수의 특수교육법 개정안

- 21대 국회에서 9건의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2020.6.10.):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수정 가결, 본회의 통과)
 - * 윤두현 의원 대표발의(2020.11.9.): 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계류 중)
 - *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2021.2.9.):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 제공 근거 마련(계류 중)
 - *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2021.2.19.):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감축하는 안 제안(계류 중)
 - *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2021.4.1.):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제출 책무를 정부가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수정(계류 중)
 - *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2021.4.22.):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채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수정(계류 중)
 - *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2021.4.22.):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계류 중)
 - *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2021.4.28.):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교육 지원 강화(계류 중)
 - *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2021.5.12.): 병원 등 순회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사 배치 및 심리적 지원 근거 마련(계류 중)
- 코로나19 관련 학습 지원 강화,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강화, 특수교육교원 확충, 대학 장애학생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법의 각 조항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최신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 제5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8 ~ 2022)에 따라 이미 특수교육 현장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 포스트코로나 등에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지원 방안,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한 교육지원 방안 등이 특수교육법에 포함되어야 함

- * 제5차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2018 ~ 2022)에는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정다운학교 운영), 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이 제안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
- * 교육부 발표 '장애인 인권보호대책'(2018),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학습지원 대책'(2020)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각종 특수교육 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으나 관련 입법 불비로 인해 후속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어려움 존재

○ 현장 요구 반영 및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추진 필요

따라서 특수교육법은 변화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특수교육을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II. 개정안 준비 과정

○ 개정안 추진 경과

-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에 대한 평가 작업 진행

- 조승래 의원실, 2017년 5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나아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조승래 의원실, 2017년 12월 19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0년, 새로운 10년을 향한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국립특수교육원, 2018년 5월 24일(목), 제25회 국내세미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10년의 의의와 향후 과제” 개최

- 특수교육법 개정 관련 연구 실시

- 국립특수교육원(2018)에서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김삼섭 교수)을 통해 기초연구 진행: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확인
- 국회 입법조사처(2020), ‘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보고서 발행
- 국립특수교육원(2020)에서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김기룡 교수)을 통해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 연구 진행: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제시

○ 개정안 조문 개발 과정

- 개정안은 김삼섭 외(2018) 및 김기룡 외(2020)의 특수교육법 관련 기초 연구 및 개정 방안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제안된 것임

- 당시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법 38개 조항을 20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개정 관련 요소를 선행연구, 조사연구, 입법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조항별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관련 연구 수행 과정에서 개정안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음

- 특수교육법 38개 조항에 대한 실효성, 체계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개정 필요 여부 확인, 특히 특수교육법의 적용 사례, 판례 및 국내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기존 조항의 효과성, 체계정합성 등을 검토한 후 조문별 개정 필요 여부 확인
- 기존 특수교육법 관련 연구 자료, 서면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기존 조항 중 개정 필요 사항, 새로운 조항 신설 사항 등을 수집: 특수교육법 관련 국내 선행연구 60여편 내용 분석 후 기존 조항 개정 필요 사항 확인, 국내 특수교육 관련 기관, 단체, 학회 등 30여개 기관으로부터 서면 의견 자료를 제출받은 후 개정 필요 사항 및 신설 조항 필요 유무 확인
-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설문조사 실시: 학부모 7,908명, 교원 및 교육전문직 8,695명, 연구자 42명, 대학 장애학생 지원 분야 참여자 190명 등 총 16,835명이 설문조사 응답
-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7개 시도 순회토론회, 17개 시·도 특수교육 담당관·학교관리자 50여명, 학교 과정별 특수교육교원 50여명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협의회 각각 1회 개최
-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하여 특수교육 관련 학회, 특수교육 관련 단체 등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전문가협의회 2회 개최

-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된 조항별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현장적합성 등을 추가 검토하고, 장애인 단체 등이 제안한 추가 수정 제안 사항 등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안을 제안하였음(조항별 개정안에 대한 전문과 신구대비 비교 자료는 붙임1과 붙임2 참조)

III. 개정방향

-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특수교육법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통합교육 실현을 촉진하는 등 특수교육 현장의 실제적 요구를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하며, 미래의 교육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그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특수교육법은 하나의 이론적 개념이 아닌 실제 교육 현장의 요구에 바탕을 둔 제도적 수단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개정 요구 과제를 종합하여 그 개정 방향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점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법의 개정 방향을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개정 과제 등을 반영하여 [그림 III-1]과 같이 도식화하여 제시해 볼 수 있음



[그림 III-1] 특수교육법 개정 목표,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과제

- 그림 [III-1]에서 제안된 특수교육법 개정 방향은 특수교육법 주요 개정 과제를 토대로 도출한 것이며 장애학생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기반 구축 등 6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음.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와 같은 형태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

으로 완전무상교육 실현, 조기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공적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구축,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책무 강화 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를 첫 번째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였음

- 둘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다양한 인권 침해 사건이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장애 차별을 근절하고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예방 대책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구축을 두 번째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였음
- 셋째, 특수교육대상 학생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비율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내용 확대 등 특수교육 현장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특수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에 반해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및 특수교사 배치 기준은 지난 15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있음. 이점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 특수교사 배치 기준 등을 한층 강화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세 번째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였음
- 넷째, 통합교육이 물리적 통합에만 그치고 있고 교육과정적 통합, 사회적 통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수교육 현장 구성원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만성적인 문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통합교육이 장애학생 교육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 현장에서, 모두가 책임지는 구조에서 촉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통합교육 실현 환경 구축을 네 번째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였음
- 다섯째, 그간의 특수교육이 양적 측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앞으로의 특수교육은 장애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점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다섯 번째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였음
- 여섯째,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보호자와 특수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고, 이들 보호자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수교사를 비롯하여 특수교육 현장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치에 기반하여 특수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을 여섯 번째 개정 방향으로 제안하였음

IV. 개정안 개요 및 주요 내용

1. 개정안 개요

- 개정안의 전체적인 조문 구성 현황을 기준 법률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IV-1>과 같음

<표 IV-1>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조문 체계와 기존 법률 조문 체계 비교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설>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제4조(차별의 금지)	제4조(차별의 금지)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신설 조항에 통합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6조(중앙특수교육위원회)	제2장→제1장
<신설>	제7조(시·도특수교육위원회)	제2장→제1장
<신설>	제8조(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제2장→제1장
<신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의무교육 등)	제11조(의무교육 등)	제1장→제2장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제12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13조(보호자의 의무 등)	제3장→제2장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14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15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16조(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신설>	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	
<신설>	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운영 등)	
<신설>	제19조(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신설>	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	
<신설>	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신설>	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비고
〈신설〉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25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6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장 제목 수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 지원 내용의 결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제31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신설〉	제32조(교육과정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신설〉	제34조(평가 등)	
제21조(통합교육)	제35조(통합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37조(진로·직업교육의 지원)	
〈신설〉	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신설〉	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제40조(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제25조(순회교육 등)	제41조(순회교육 등)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42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신설〉	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신설〉	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5장 고등교육	제5장 고등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제47조(특별지원위원회)	
〈신설〉	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49조(장애학생지원센터)	
제31조(편의제공 등)	제50조(편의제공 등)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제51조(학칙 등의 작성)	
〈신설〉	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제6장 보칙 및 별칙	제6장 보칙 및 별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제53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신설〉	제55조(심사청구자의 보호)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5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안	비고
제38조(별칙)	제57조(별칙)	
제38조의2(별칙)	제58조(별칙)	
〈신설〉	제59조(양별규정)	

- <표 IV-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특수교육법은 6장 38조로 구성되었으나 제안된 전부 개정안은 6장 59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장 구성은 동일하나, 제3장의 명칭을 수정하였고, 각 장의 조문을 각 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였음
 - 기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제10조)를 제1장 총칙으로 이관(협치 기반 논의 및 심사 기구 등의 특성 고려)
 - 기존 제1장에 규정된 의무교육 관련 조항(제3조)과 제3장에 규정된 보호자의 의무 등(제19조) 의무교육 실시 관한 조항을 제2장으로 이관
- 제안된 전부 개정안에는 21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38개 조항의 경우 조문 내용 수정, 조문 번호 또는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항 번호 수정, 조문의 체계 또는 자구 등이 수정되었음
- 기존 조문 대비 주요 개정 사항과 개정 유형을 요약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IV-2>와 같음

<표 IV-2> 기존 특수교육법 조항에 따른 주요 개정 사항 및 개정 유형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목적 내용 일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관련 조문 신설〉 -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	○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 일부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개념 수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정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 확대: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추가 - 보호자 개념 자구 수정: “친권자·후견인” → “친권자, 후견인”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개념 수정: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 일반학교에서 →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 개별화교육 명칭 및 개념 수정: “개별화교육”(교육과정 중심) → “개별화교육지원계획”(교육지원 계획 중심) - 순회교육 대상 기관인 복지시설 범위에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추가 - 진로 및 직업교육 명칭 수정: 진로 및 직업교육 → 진로·직업교육 - 특수교육기관 범위 확대: 특수교육지원센터 추가 <관련 호 신설>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과 명칭 수정 및 개념 신설: 전환교육과로 변경 - 통합학급 개념 신설 			
제3조 (의무교육 등)	<p><장 이동> - 제2장 <관련 항 신설> -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무상교육 범위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규정을 삭제하고, 무상교육의 범위를 법률의 조항으로 규정 <p><관련 조문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무상의 범위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으로 위임. 안 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	○
제4조 (차별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의 개념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용하도록 수정하고, 인용 법률 조항 제시 <관련 호 신설> -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및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도 차별의 범위에 추가 <관련 항 신설>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자인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배제 또는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 차별행위 판단 또는 시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고려 규정 제시 <관련 조문 신설>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 기존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이 조문으로 이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 금지 및 장애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한 운영 근거 마련. 안 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 장애인권교육에 대한 실시 관련 조문 신설. 안 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 의 임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 호 업무의 명칭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발견 관련 업무 수정: 조기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으로 수정 -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업무 수정: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과 운영 방안 강구 및 지원 <p><관련 조문 신설> -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안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위탁 요건 규정 제시 <p><관련 항 신설> -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 특수학교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규정 신설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기관의 균형별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규정 신설 		○	
	제7조(위탁 교육기관의 변경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특수교육위원회”로 변경 	○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수정: “교원의 자질 향상” →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 일부 자구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연수의 목적 수정: “자질 향상” → “자질 및 전문성 향상” - “포함되어야 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수정 <p><관련 조문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직 교원 이외에 예비 교원에 대한 자질 향상 규정 신설. 안 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관련 항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 안내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 		○	
	제10조 (특수교육운 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따라 별도의 조항으로 각각 규정 ○ 이에 따라 기존 제1항의 내용을 수정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확대를 위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위원회”로 명칭 수정 <p><관련 항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특수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 		○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p>〈관련 조문 신설〉 –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특수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7조(시·도특수교육위원회) - 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문 신설. 안 제8조(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제11조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국가 수준(국가특수교육원), 시·도 수준(시·도특수교육원), 시·군·구수준(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각각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제11조를 3개 조로 분리하여 각각 국가 수준, 시·도 수준 및 시·군·구 수준의 원·센터 설치·운영 내용 규정(2개 조문 신설) ○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시·도특수교육원은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연수·연구 업무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기존 제11조를 안 제20조로 이동)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감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p>〈관련 항 신설〉 – 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규정하고 기존 업무에 선정·배치 이력 관리, 통합교육, 진로·직업교육, 인권보호 및 보호자 지원 관련 업무 추가 -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인력의 자격 또는 유형 조항 신설 	○	○	
	<p>〈관련 조문 신설〉 – 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 조항에는 교육부장관이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안 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운영 등) - 시·도 수준 조항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위임. 안 제19조(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 조문 신설. 안 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제3장 특수교 육대상 자의 선정 및 학교배 치 등	제12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제출 주체를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 ○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실태조사에서 다루는 것으로 함 		○	
	제13조의2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p><장 이동> – 제1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6조로 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의2를 제6조로 이관하고, 해당 조항에 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항 추가 			○ (이관)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수정: “장애의 조기발견 등”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보건소와 병의원으로의 선별검사 의뢰에 따른 비용 지원 근거 규정 제시 ○ 조기발견 관련 협조 체계에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 진단·평가 실시 과정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 사용 근거 마련 ○ 조기발견 실시 관련 구체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수정·보완 <p><관련 항 신설> – 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와 병의원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별검사 결과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등록장애인 명부 및 장애아동복지지원을 제공받는 장애아동 명부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등록장애인 명부 등에 따라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15조 (특수교육대 상자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명칭 변경(1건, 정서·행동장애 → 정서행동장애) 및 장애유형 추가(1건, 중도중복장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관련 자구 수정 <p><관련 항 신설> – 1건</p>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조항 신설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교육지원 내용에 특수교육 지원 방법 및 내용, 통합교육 등을 추가 <관련 항 신설>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 결정시 학생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진단·평가 시행 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 활용 근거 조항 신설 		○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수정: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영어에 한함) 추가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판단 기준에 “학업 및 기능상의 최상의 발달과 사회통합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내용 추가 ○ 국립학교의 학생 선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차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타 시도 배치시 국립학교와의 협의 규정 삭제 <관련 항 신설> -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영아에 대한 배치 기관에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삭제 ○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또는 가정에 있을 경우 순회교육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주체가 교육장임을 명시 		○					
	제19조 (보호자의 의무 등)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장 이동> - 제2장</td> </tr> <tr> <td style="padding: 5px;"><관련 항 신설> - 1건</td> </tr> <tr> <td style="padding: 5px;">-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 재취학 신청 등에 대하여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td> </tr> <tr> <td style="padding: 5px;"><관련 조문 신설> - 1건</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보호자 대상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 개최,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전담인력 배치,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1인 이상 포함, 개별화교육계획 등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교육 환경 개선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 안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td> </tr> </table>	<장 이동> - 제2장	<관련 항 신설> - 1건	-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 재취학 신청 등에 대하여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 조문 신설> - 1건	- 보호자 대상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 개최,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전담인력 배치,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1인 이상 포함, 개별화교육계획 등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교육 환경 개선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 안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
<장 이동> - 제2장									
<관련 항 신설> - 1건									
-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 재취학 신청 등에 대하여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련 조문 신설> - 1건									
- 보호자 대상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 개최,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전담인력 배치,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1인 이상 포함, 개별화교육계획 등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 교육 환경 개선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 안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 학교과정별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 <관련 항 신설> -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 수정 지도 및 대안 평가 적용 근거 관련 규정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교사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위한 교과별 교수학습자료 미 교육과정 운영 지원 마련 및 제공 근거 규정 신설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 조문 신설>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일반 원칙을 초중등교육법에 준용하여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2조(교육과정 등)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당한 평가 실시, 교과별 평가 기준 마련, 평가관리 및 교과별 평가방법과 도구 개발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 안 제34조(평가 등) 		○	○
제21조 (통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이념 실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 ○ 통합교육계획을 일반학교 교원과 특수교육 교원이 협력하여 일반학교의 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 <관련 항 신설> - 4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교육 실시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신설 		○	
제22조 (개별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수정: 개별화교육 →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원에 특수교육대상자 추가,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이 매 학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학기별 최초 회의를 매학기 시작 후 30일 이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p>내 개최할 수 있는 규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회의 운영, 계획 수립 관련 서식 및 운영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 마련 <p>〈관련 항 신설〉 - 4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예산 소요 내역 포함 규정 신설 - 예산 소요 내역 포함 계획 수립시 각급학교의 장이 예산 편성, 요청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 교부, 배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수정: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진로·직업교육의 지원” ○ 진로·직업교육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진로·직업교육을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규정 ○ 진로·직업교육 협의체 구성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추가 <p>〈관련 항 신설〉 -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직업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진로·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 자격 규정을 별도 항으로 분리 <p>〈관련 조문 신설〉 - 2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조문 신설. 안 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 신설. 안 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제목 수정: “전공과의 설치·운영” →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 전공과를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환교육과의 지정·위탁에 관한 위임 사항 규정 <p>〈관련 항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전환교육과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제25조 (순회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시행 주체의 순서 변경: “교육장 또는 교육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일반학교에도 순회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순회교육이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 ○ 항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마련 		○	
제26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번호 수정 		○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를 기존보다 하향 조정하여 규정하고, 영어 및 전공과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 기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4명 → 3명, 초등학교 6명 → 5명, 중학교 6명 → 5명, 고등학교 7명 → 6명(각 1명 감축) - 영어 특수교육대상자 3명마다, 전공과 6명마다 1개 학급 설치 ○ 순회교육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주체를 교육감에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수정 <관련 항 신설> -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규정 신설 - 학급 설치 기준 위반시 벌칙 부과 규정 신설 <p><관련 조문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교원의 총정원 산출 기준 및 배치 기준을 법률의 조문으로 명시. 안 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 ○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 관련 내용 구체화 ○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의료적 영역에 한해 제공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격인 언어재활과 국가공인민간자격인 보행재활 추가 ○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아닌 교육부장관(국립학교) 및 교육감(공·사립학교)가 지원하도록 규정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조공학서비스로 수정하고 지원의 주체를 각급학교의 장이 아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수정 ○ 통학지원에 대한 시행 주체를 각급학교의 장이 아닌 교 		○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p>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p>〈관련 항 신설〉 - 5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의 원칙을 조항으로 명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 특정한 장애유형 및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통역, 점역, 행동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제공 규정 신설 <p>〈관련 조문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의료적 케어 등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 안 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제5장 고등교 육	제29조 (특별지원위 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 번호 수정 	○	
	제30조 (장애학생지 원센터)	<p>〈관련 항 신설〉 - 3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장애 관련 경험을 갖춘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고,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대학의 장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학 자체 교육복지 및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31조 (편의제공 등)	<p>〈관련 항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수험편의 지원, 학습지원, 대학생활 등 각종 편의제공 등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p>〈관련 조문 신설〉 -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문 신설. 안 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 ○

장	조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유형		
			체계· 자구 수정	내용 수정 (체계· 자구 포함)	관련 조문신설
제6장 보칙 및 별칙	제32조 (학칙 등의 작성)	○ 조문 번호 수정	○		
	제33조	○ 조문 번호 수정(공백 조항)	○		
	제34조	○ 조문 번호 수정(공백 조항)	○		
제6장 보칙 및 별칙	제35조 (대학의 심사청구 등)	○ 조문 번호 수정	○		
	제36조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특수교육위원회)에 따른 자구 수정 ○ 심사청구 대상 추가(학급설치 기준 위반) 〈관련 조문 신설〉 - 1건 - 심사청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문 신설. 안 제55조 (심사청구자의 보호)	○		
	제3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 조문 번호 수정	○		
	제38조 (별칙)	〈관련 호 신설〉 - 1건 -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 마련		○	
	제38조의2 (별칙)	○ 보호자 보조·동행 등 참여를 요구한 자에 대한 벌칙 대 상 추가 〈관련 호 신설〉 - 1건 - 심사청구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자 등을 벌칙 대 상으로 추가 〈관련 조문 신설〉 - 1건 -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조문 신 설. 안 제59조(양벌규정)		○	○

2. 개정안 주요 내용¹⁾

○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현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장애대학생에 대한 완전 무상교육 실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아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대상자 및 대학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는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안 제11조, 안 제48조),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등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며, 무상의 비용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비용 전체를 포함하는 등 무상교육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11조)
- [조기발견 고도화 및 진단·평가 체제 개선] 의료기관의 선별검사 결과 및 등록장애인에 대한 명부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안내 할 수 있는 공적 특수교육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하고자 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장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특수교육적 요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활용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27조)
-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 고도화]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공적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 시도 → 시군구에 이르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서비스를 특수교육대상 학생,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들과 직접 제공, 연계, 협력하는 최종 전달 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유·초·중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지원하는 체제로 재편하고,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담당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전문직, 특수교사,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20조). 특수교육 지원 체제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특수교육 관련 연구 및 연수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별 특수교육원(안 제19조)과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안(안 제18조)을 제안하였음
-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하여 사립의 특수

1)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전문은 붙임1 자료, 기존 특수교육법과의 비교 결과는 붙임2 자료 참조

교육기관 위탁 요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규정과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음(안 제14조)

2.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 보장]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동등한 교육권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실체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원칙을 명시하였고(안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 과정에서 아동 최우선의 원칙 및 장애아동 최대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30조), 특수교육대상자를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당연직 구성원으로 명시함으로써 아동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음(안 제36조)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기권리 옹호 역량 교육 실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기결정 능력 향상에 필요한 내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권리옹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36조).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차별 및 인권 침해 금지 대상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등을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규정하였음(안 제4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격권, 사생활 보호 및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보장 받고,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제안하였음(안 제5조).
-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적법 절차의 권리 보장] 차별 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이점을 감안하여 처벌 대상을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 행위로 확대하였고, 벌칙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위반행위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안도 함께 마련하였고(안 제57조, 안 제58조, 안 제59조), 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청구를 신청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청구자에 대한 방해 또는 취소 강요 금지 및 불이익 금지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안 제55조).

- [장애인권교육 실시 근거 마련] 각급학교 등에서 시행해 왔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장애인권교육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명명하고, 이에 대한 실시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특수교육법에 규정하였음(안 제22조)

3.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 [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수 기준 감축]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에서 5명, 고등학교는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1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43조)
-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강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특수교사 1명 비율로 강화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특수교사를 통합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배치하고, 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진로·직업교육 등을 위해서도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안도 함께 제시 안였음(안 제44조).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개념 명료화 및 지원 범위 확대] 특수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성격을 분명히하고 그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고(안 제2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강조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상담지원, 심리·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지원, 접역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치료지원에는 언어재활, 보행재활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하였음(안 제45조).
-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일반학교에도 순회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 제공 의무화 규정을 제안하였음(안 제41조).
-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지원 전달체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에게 그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자격 기준과 직무연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였으며(안 제49조), 최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학생이 대학에 많이 입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학 입학 기회 확대, 학습지원,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였고(안 제50조), 대학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하는 안을 제안(안 제52조)하는 등 장애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제안하였음.

4.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개념 제안] 통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일반학생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정의(안 제2조)
-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육교원의 책무 확대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 근거 마련]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의 주체가 기존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일반학교의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교육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음(안 제2조 및 안 제35조)
- [통합교육 여건 개선] 교육과정 수정, 협력교수 등 통합교육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통합교육계획에 포함시키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교육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관한 근거도 함께 제안하였음(안 제35조)
-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지원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통합교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일반교육교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는 규정을 수정하고(안 제16조), 예비 교사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책무도 제안하였음(안 제17조).

5.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 [개별화교육계획 명칭 변경 및 협의 기반 교육지원 문서로서의 기능 명문화] 기존 개별화교육계획을 개별화교육지원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이 학교 생활 동안 필요한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으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개인의 맞춤형 특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시 개인별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도 당연직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였으며,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가족지원 내용,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내용,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건강관리 지원 내용 등을 각각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지원 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36조)
- [특수교육과정 운영 체계 및 성격에 대한 법적 근거 구체화 및 교수학습 지원·대안 평가 실시 근거 마련 등] 특수교육과정의 체계와 성격을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과정이 일반교육과정의 대안교육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일반교육과정과 독립·병행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대안평가 및 평

가조정 등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안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평가 과정에서의 장애를 고려한 조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 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및 교과용도서 개발, 교과용도서 원본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제안하였음(안 제21조).

-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 근거 마련] 특수교육 지원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9조), 특성화 특수학교 설치·운영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 일반학교 내 순회학급 설치·운영(안 제41조),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안 제35조),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한 학급 운영(안 제43조)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진로 및 직업교육 확대 시행 근거 마련]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로·직업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학교부터가 아닌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설계, 취업·창업·자립생활 등 진로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37조), 대학 진학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하였고(안 제38조), 기존 전공과를 학교에서 지역사회 전환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그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환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각급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등교육 이후 다양한 기관에서 계속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음(안 제40조).
-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근거 마련 및 다양한 교육지원 내용 명시]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중도중복장애를 신설하였고(안 제28조),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안 제43조), 심리·행동지원, 의사소통지원을 비롯하여(안 제45조), 학교 차원에서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의료인 등을 배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였고, 보건교사 및 특수교사 등이 건강관리 지원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안하였음(안 제46조)

6.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보호자에 대한 진학 관련 정보 제공·교육지원·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별도의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호자 지원 관련 전담인력 배치 규정도 함께 제안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을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등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보호자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안을 제안하였음(안 제24조)
-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금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였음(안 제4조)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정책 협의 기능 강화] 기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특수교육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선정·배치 및 심사 청구 심사 기능과 함께 다양한 특수교육 현안 과제를 다양한 특수교육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 대표 등이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협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안하였음(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붙임1]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전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 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또래와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주요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계획

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자립생활교육 등을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11호에 따른 특수학급,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2호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3. "전환교육과"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취업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4. "통합학급"이란 제12호에 따른 각급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또래의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한 학급을 말한다.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제36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차별 및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배제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판단하거나 이를 시정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을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중앙특수교육위원회) ①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도특수교육위원회) ①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③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및 지역내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서비스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특수교육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과 운영 방안 강구 및 지원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전환교육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학교급식비(친환경급식비를 포함한다.), 기숙사 이용에 따른 숙식비용
2.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3. 이 법 제45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따른 비용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2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취학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여부 및 재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

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정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이 운영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또는 비용부담 및 제7항의 지도·감독 등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자격검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

- ② 국가특수교육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시·군·구 특수교육지원 센터 운영 지원, 특수교육 관련 연수·연구 지원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이유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이력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조기발견 지원
3. 교수·학습활동 지원
4. 순회교육 지원
5. 통합교육 지원
6. 진로·직업교육 지원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 특수교육 연수
9. 인권보호 지원
10.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상담 및 정보제공
11.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업무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전담 교육전문직
2. 특수교사
3. 진단평가, 선정·배치 이력정보관리, 진로 및 직업교육, 인권보호, 법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업무 전담 인력

⑥ 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여야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제5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의 자격·배치 기준 및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①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교수학습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
2.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3.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방법 개발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4.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5. 교과용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제작지원(영상·멀티미디어콘텐츠 자료 등의 화면해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및 원본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교수학습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원본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도서의 발행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수학습센터에 납본하여야 한다.
- ⑤ 교수학습센터는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등을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교과용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⑥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제4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대체자료를 교수학습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교수학습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센터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교과용도서 납본 절차 및 보상, 원본데이터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① 각급학교의 장은 매학기 1회 이상 제4조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강사 배치, 우수 사례 발굴·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애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우선적으로 투입,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취학 및 진학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 가정 내에서의 특수교

육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자의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국가장애 학생학부모지원센터(이하 학부모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대표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법 제36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⑦ 제2항의 학부모센터 설치·운영, 제3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보호자 지원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 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실태조사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또는 특수교육 요구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선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 및 지역 내 아동의 장애가능성을 발견한 보건소와 병의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선별검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유아 또는 학령기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명부에 기재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제공받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홍보 또는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보건소와 병의원 등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 도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

절차, 제4항의 안내 절차, 제6항의 사전 동의 및 진단·평가 의뢰 절차, 제7항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의 내용과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 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중도중복장애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지원 방법 및 내용,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 제37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46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할 때에 학생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진단·평가 시행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특수교육지원센터(단, 영어에 한함)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 보호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업 및 기능상의 최상의 발달과 사회통합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31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성격, 이수 대상, 각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문서는 분리나 차별 없이 정하고, 제2조제9항, 제37조 및 제28조제1항제11호 등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교과(教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과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 특성 및 학습 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영어교육과정과 전환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교육적 배치환경 등의 학습 특성과 학습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조정)하여 지도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조정이나 대안평가 등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와 학습 특성으로 인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 학교급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영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 간 특수 교육대상자의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34조(평가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 교육대상자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성취한 학습의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기록해야 한다.
-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포함한 교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③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정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하는데 필요한 평가관리와 교과별 평가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35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제2조제6호에 따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3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차별금지 예방, 제22조에 따른 장애인권교육 실시, 제16조에 따른 교원연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정 및 평가 조정, 협력 교수,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의 학생수 또는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교원의 추가 배치,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특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의 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①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3. 특수교육교원
 4. 일반교육교원. 단,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5. 제37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단,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기별 최초 회의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족지원 또는 진로·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일반학교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결정 및 인권 보호·증진 지원
 5.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지원
- ④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제

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필요한 예산 소요 내역을 포함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예산 소요 내역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은 이와 같은 예산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편성·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예산을 해당 학교에 편성·교부·배분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운영,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운영 절차, 제4항에 따른 송부 및 보관 방법, 제8항에 따른 별도 예산 요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진로·직업교육의 지원)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설계 및 취업·창업·자립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진로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및 자립생활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와 전환교육과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각급학교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학에 입학하고자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준비에 따른 진학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학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장애유형에 적합한 대학 입학 수험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수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은 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① 각급학교, 고등학교 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사회 유관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생에게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환교육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환교육과를 설치할 각급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전환교육과를 설치한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교육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환교육과의 지정·위탁 절차, 전환교육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의료법」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전환교육과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41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일반학교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방문 수업일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아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4.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5. 전환교육과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증복지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④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54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① 각급학교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 ②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및 일반학교에는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에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생활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보호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정보제공,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재활, 보행재활 또는 「장애인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등 적절한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지원(보완대체의사소통체계 등을 포함한다), 수어 또는 문자 등의 통역지원, 점역지원, 심리·행동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구 또는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등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⑨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⑩ 제9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⑪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⑫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하고, 매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상담지원, 제3항에 따른 가족지원,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따른 통역지원·점역지원·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교육 활동 지원, 제7항에 따른 보조공학서비스 제공, 제8항에 따른 통학지원, 제9항에 따른 기숙사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인권친화적 교육 활동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따른 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교육 활동 지원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각급학교 배치 전과 배치 후를 각각 구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흡인, 위루관·경관영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또는 자문을 받아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순회 보건교사 등(이하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특수교육교원과 협력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교원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기관은 각급학교 내의 건강관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5장 고등교육

제47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①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 장애학생 무상교육의 범위 및 실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50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대학의 장은 장애지원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의무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 내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교수학습·생활복지·취업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및 인권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지닌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및 수험편의 지원, 학습 지원, 대학 생활 중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1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2. 장애유형별 고등교육 지원 지침 개발
3. 장애대학생의 복지 및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업
4.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업무 담당자의 연수
5.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6.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7. 그 밖에 고등교육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등교육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교육전문직 등을 둔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별칙

제53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 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5. 제43조제4항에 따른 학급설치 기준 위반

제55조(심사청구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심사청구자에게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청구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심사청구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심사청구등"으로 본다.

제5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또는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 또는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3.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보호자의 보조·동

행 등 참여를 요구한 자 또는 개인별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2.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을 한 자

3. 제55조를 위반하여 심사청구를 방해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삼사청구의 취소를 강요하거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취한 자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및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신구비교표

<표 1>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신구비교표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번역)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 관련 내용이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생애주기에 따른"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장애인형, 장애정도"와 같이 장애 특성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의 특성과 요구"와 같이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문구 일부를 수정, 제안함	최근 특수교육의 핵심적 요소인 '교육과정 수정'의 개념 포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최근 특수교육의 핵심적 요소인 '교육과정 수정'의 개념 포함 • 특수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의하고, 미국 IDEA 사례(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 등을 활용하여 정의 개념 수정 제시 • 특수교육은 교육과정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재안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는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개념으로 각각 재정립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기죽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기죽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 기죽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이 아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으로 재개념화하여 제시 • 기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범위에 의사소통지원과 행동지원을 추가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반영(보조인력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 조문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한글맞춤법 개정(2015. 1. 1. 시행)에 따라 가운데 점 음례에 맞출(쉼표로 대체)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차별이 나 편견 없이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또래와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차별이 나 편견 없이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아동을 주체로 하는 통합교육 개념 도입 ○ 통합된 교육 환경을 "또래와 함께 동일한 교육환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정상화 이념 실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규정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정부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자원계획"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주요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기존의 개별화교육과 같이 개별화된 교육과정이 아닌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게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획으로 그 내용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로 재정립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등)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순회교육 실시 대상 기관에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함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진로·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자립생활교육 등을 특수교육기관과 지역사회·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가운데 점을 사용하여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고에서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전환"(transition)의 의미로 제시함으로써, 진로·직업교육을 직업학부, 중등이후 교육 진입(평생교육, 고등교육) 등 성공적인 전환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교육지원 방안으로 정의 ○ 기존 직업재활, 자립생활훈련 등에서 사용해 있던 재활, 훈련 개념을 삭제하고 교육으로 모두 통일하였음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11호에 특수학급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11호에	○ 현행 전공과를 전환교육과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른 것임 ○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따른 특수학급,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합시다 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학교를 인용하고, 특수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조항을 추가함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2호에 따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일반학교의 범위를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각급학교 범위 내로 특정형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대상 일반학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호 신설〉	13. "전환교육과"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취업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진로·직업교육의 목표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으로 제시함에 따라, 전공과는 학교원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전환을 지원·촉진하는 과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전환교육과로 변경하고자 함
〈호 신설〉	14. "통합학급"이란 제12호에 따른 각급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또래의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한 학급을 말한다.	통합학급이라는 개념이 일선 교육 현장, 정책 자료, 통계 자료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는 법적 정의가 부재하므로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음
〈조문 신설〉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법을 적용, 해석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장애인권리협약)에서 따라 아동(장애아동)과 장애인(장애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용,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명시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힘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힘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장애인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의 범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범위로 규정 ◦ 조문 내 인용 조항 번호 수정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의 차별	1.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제36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참여에의 차별	◦ 안 제37조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추가 필요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호 신설)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차별 및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그밖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유사 중복 규정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배제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승진, 인센티브지급, 전보, 업무 분장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조항 신설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향 신설〉	<p>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정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판단하거나 이를 시정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률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행위 판단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 니된다는 인권보호 일반원칙 반영
〈향 신설〉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 단을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③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장애학생인권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제13조의2를 안 제5조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p>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발견 및 신고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13조의2를 안 제5조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13조의2를 안 제5조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향 신설〉	<p>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제13조의2를 안 제5조로 이관하여 통합 규정 기존의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이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존 제13조의2제3항의 조사 방법·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과 통합하여 제시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p>제6조(중앙특수교육위원회) ①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7개 위원회, 의장 강화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을 “특수교육위원회”로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p>	<p>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둔다.</p> <p>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회"로 수정 ◦ 조문 번호 수정(제1장 총칙으로 이동),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p>
<p>〈조문 신설〉</p>	<p>제7조(시·도특수교육위원회) ① 제1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p> <p>③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시·도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분과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관련 조문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 ◦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법에 규정하고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본 개정안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실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p>
<p>〈조문 신설〉</p>	<p>제8조(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및 지역내 특수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관련 서비스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특수교육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시·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시·군·구특수교육위원회 관련 조문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p>
<p>〈조문 신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특수교육법이 교육일반법의 규정보다 특별법의 위치에 있고,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교육 관련 법률(예를 들어 학생 선발 또는 배치, 통합교육 지원 관련 일반학교의 책무 등)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명시</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개정안	개정 사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 조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도 함께 조정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지원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계의 연구·개선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⑤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⑥ 조문 번호 수정	⑥ 조문 번호 수정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 정비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 정비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 정비	-	-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⑦ 기존 진로교육을 진로·직업교육으로, 전공과를 전환 교육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 자구를 수정하고 내용도 함께 수정	⑦ 기존 진로교육을 진로·직업교육으로, 전공과를 전환 교육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조항 자구를 수정하고 내용도 함께 수정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과 운영 방안 강구 및 지원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및 전환교육과 운영 방안 강구 및 지원	-	-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	-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	-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번역)	개정안	개정 사유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40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고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다. 다만,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급 또는 출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1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다. 다만, 출석 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급 또는 출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①.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범위를 법률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따른 비유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기존 법률 조항 내용으로 하되, 무상의 범위를 법률로 제시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만 규정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보호자에게 문서로 안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조항의 효성을 보장하고자 함 ○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항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 안내에 대한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규정 마련 ○ 조문 번호 수정(제2장 이동),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을 신청할 수 있다.	○ 재취학에 관한 사항임을 구체적으로 명시
〈항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재취학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관할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여부 및 재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을 제한하고자 함 ○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및 재취학 신청에 따른 사전 심사를 관할 시군구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서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담당하도록 규정(시행령 제14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문 번호 수정
〈항 신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정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수학교를 설치·운영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5조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1-1.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설립 다양화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유·초·중등과정별 '직업특성화특수학교', '체육특성화특수학교', '예·체능특성화특수학교' 등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기존 특수학교를 특성화특수학교로 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하고자 함
〈항 신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무교육 이행을 위하여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필요한 근거 마련 ○ 장애유아 의무교육 이행을 위하여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필요한 근거 마련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요건을 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포함 위임 규정임을 고려하여 요건의 최소한의 범위 제시 방안 마련 ○ 항 번호 수정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 시립의 특수교육기관이 운영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교육 위탁하는 항은 있으나 위탁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허가 현행법에 없어 신설함 ○ 항 번호 수정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항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한 시립의 특수교육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에 사립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존재하나, 이 법률에서의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부재하여, 추가 신설함 ◦ 특히 학교법인이 아닌 시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립 특수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또는 비용부담 및 제7항의 지도·감독 등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항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 별도 항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저항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저항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특수교육위원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도 특수교육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명칭을 본 개정안에서 “특수교육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조항의 명칭도 함께 수정 ◦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제8조(교원의 자질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원으로서의 소양과 태도 등 기본적 자질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지원, 학생지도 등 전반적인 역량을 의미하는 전문성 향상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교원의 자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시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시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문 내용 수정에 따라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으로 조문 제목도 함께 수정</p> <p>◦ 문장 수정, 연수 대상을 먼저 표기하고 연수 목적을 제시하는 순서로 문장 기술</p>
<p>〈조문 신설〉</p>	<p>제17조(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자격검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 교원양성단계에서 교사 자격 검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둘으로써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함</p>
	<p>제18조(국가특수교육원 설치·운영 등)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수교육 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한다.</p> <p>② 국가특수교육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시·도특수교육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직속으로 국가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근거 마련</p> <p>◦ 국가특수교육원 → 시·도특수교육원 →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와 같은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p> <p>◦ 기존 국립특수교육원이 국가특수교육원의 역할 담당(법 개정 후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치제령」 개정 필요)</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조문 신설〉	<p>제19조(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특수교육 관련 연구 지원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특수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특수교육 정책기획 및 실행의 일관성 강화를 위해 시·도특수교육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특수교육원으로 통일하여, 그 기능을 시·군·구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과 연수 및 연구 업무를 중심으로 규정 기존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는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역 기번의 특수교육 지원 전달체계를 구현하고자 함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이유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p>제20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이유로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법률 제22조로 이관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을 포함적으로 규정 제시 특수교육 신청, 지원,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출입문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해 왔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는 관할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 다만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특수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특수교육원으로서 전환하고자 하는 인은 기존의 지방교육지사에 관한 법령 등을 중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항 신설〉

-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이력 정보관리
 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조기발견 지원
 3. 교수·학습활동 지원
 4. 순회교육 지원
 5. 통합교육 지원
 6. 전로·직업교육 지원

- (기존) 초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지원
- (추가 또는 수정) 선정·배치 이력정보관리, 순회교육 지원, 통합교육 지원, 전로·직업교육 지원, 인권보호 지원, 보호자 상담 및 정보제공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번역	개정안	개정 사유
7.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8. 특수교육 연수 9. 인권보호 지원 10.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상담 및 정보제공 11.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업무	<p>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기존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 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특수학교 중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등 일반학교의 해당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 ◦ 항 번호 수정
	<p>⑤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p> <p>(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 배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추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는 특수교사의 배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 추가 규정 필요 ◦ 진단평가, 선정배치, 이력정보관리, 진로 및 직업교육, 인권보호, 법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 ◦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력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 업무 전담 인력
	<p>⑥ 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제5항의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인력의 자격·배치 기준 및 기타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⑦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 자격과 배치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도록 제시 ◦ 항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조문 신설〉	<p>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① 국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이하 “교수학습센터”라 한다.)를 둔다.</p> <p>② 교수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편찬 및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특수교육대상자 평가 방법 개발 및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미래교육 대비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 교과용도서 등의 대체자료 제작·제작자원(영상·멀티미디어콘텐츠 자료 등의 화면해설 지원 등을 포함한다) 및 원본데이터 관리 그 밖에 교수학습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③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시·도특수교육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원본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도서의 발행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수학습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교수학습센터는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등을 납부한 자에게 자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교과용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의 부설 센터로 설치·운영) 시작장애인 등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화면해설 지원 추가 규정 제시 교수학습센터가 시도특수교육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과용도서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국·검·인정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사의 원본데이터(파일)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기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교과용도서의 원본데이터 납부 근거 마련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 적시 제공을 위해 납본 기한 명시 필요(도서관법 제20조 참조 등) 대체자료 제작 등을 시각장애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안으로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인 경우에는 그 도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제4항에 따른 교육도서의 대체자료를 교수학습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교수학습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센터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도서 납본 절차 및 보상, 원본데이터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교과용도서의 원본네이터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조문 신설〉	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① 각급학교의 장은 매학기 1회 이상 제4조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권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강사 배치, 우수 사례 발굴·보급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장애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급학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권교육으로 변경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특수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 신설 ○ 규정이 반영될 경우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 조항 삭제 필요 (소관부처의 관할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실시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특수교육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조문 신설〉	제23조(재난 및 인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인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우선적으로 투입, 지원하여야 한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사고 발생 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조문 신설〉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취학 및 전학 등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취학 또는 전학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 기정 내에서의 특수교육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자의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상담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국기장에 학생학부모지원센터(이하 학부모센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③ 교육감은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대표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안 제20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하위 부서 조직 설치 또는 전담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별도 부서보다는 우선 전담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안
⑤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각급학교의 장에게 법 제36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녀의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자녀의 개별화교육계획 문서 등 특수교육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복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 신설
⑦ 제2항의 학부모센터 설치·운영, 제3항의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보호자 지원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부모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학부모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특수 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연차보고서는 교육부가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제출 절차의 간소화 및 현행화를 위하여 제출 주체를 정부가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수정 ◦ 조문 번호 수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 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함으로써 조사의 내실화를 꾀하고자 함 ◦ 또한 조사 실시주기를 3년이 아닌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과 연동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실제로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 제시 필요 ◦ 조문 번호 수정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 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구 삭제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실태조사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교육실태조사를 통해 3년마다 인권 보호 및 신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규정은 과정법으로 판되어 특수교육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 ◦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라는 포괄적인 개념 제시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제정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제정	-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내용은 전부개정안 제6조에 반영
<p>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전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27조(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 또는 특수교육 요구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또 는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에서 선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와 학령기 아동 및 지역 내 아 의료기관 등에서도 특수교육요구아동을 인지하고 특</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동의 장애인성을 발견한 보건소와 병의원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선별검사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p>수교육 지원 안내(의뢰, 연계 협식으로)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조기발견 검사기관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내 영유아 및 학령기 이동의 장애기능성에 대한 조기발견 이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강제함 	<p>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특수교육 지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등록장애인에 대한 명부 공유를 통해 장애이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특수교육 지원에 관한 시행”을 보호자에게 알린 다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것으로 규정</p>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유아 또는 학령기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장애인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이동 복지지원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p>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명부에 기재된 장애인, 「장애인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이동 복지지원을 제공받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지원의 필요성,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및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p>	<p>정보제공 대상자를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 관련 진단서를 통해 장애이동 복지지원(어린이집 이용,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등) 이용 이동에게까지 확장하여 규정</p>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홍보 또는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보건소와 병의원 등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p>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홍보 또는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및 보건소와 병의원 등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조기발견에 대한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조 체계 구축 대상 기관을 확대 규정</p>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p>⑥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형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p>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p>⑦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p>	<p>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교육지원 내용 결정 시 기준의 장애유형을 판정하는 도구보다 특수교육 요구 정도를 종합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작용</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을 위한 평가 도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그 번호 수정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2항 및 제3항의 통보 절차, 제4항의 안내 절차, 제6항의 사전 동의 및 진단·평가 의뢰 절차, 제7항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의 내용과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수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체계 수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 두 개 명사가 혼합된 용어에서 가운데 점을 생략하는 최근 학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정서·행동장애를 정서행동장애로 변경 •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도중복장애학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전단 기준으로 삼아 선정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범주에 새로 포함시킴 • 중도중복장애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단·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2 이상의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중도중복장애를 지난 특수교육대상자”로 별도의 조항에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고려한 특수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이와 같은 규정 제시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외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호 신설)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외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중도중복장애	• 중도중복장애의 경우 너무 구체적인 정의를 법률의 조항에 담는 것은 다른 장애유형 규정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최소한의 내용만 조문으로 제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시행)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 ◦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항 신설〉	③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법률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선정 기준의 변경 등에 있어 탄력성을 제고 및 시의 적절성을 가지도록 함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조문 번호 수정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지원 방법 및 내용,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 제37조에 따른 전로·직업교육,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46조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통지하여야 할 교육지원 내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항 신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할 때에 학생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교육성과를 기제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활동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제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은 학생의 현재와 미래에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교육성과를 기제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활동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제시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항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항 신설〉	<p>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진단·평가를 시행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p> <p>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p>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교육적 요구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 (요구) 평가 도구 활용 근거 규정 마련 ◦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기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추가하여 배치 근거 규정 ◦ 장애영아 등에 대한 순회교육 등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담당(지원)할 수 있으므로 영아 특수교육대상자의 원적 학교를 특수교육지원센터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조문 내용을 반영한 조문 제목으로 변경,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로 수정 ◦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위원회” 명칭 수정
〈항 신설〉	<p>③ 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p>④ 특수교육지원센터(단, 영어에 한함)</p> <p>⑤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⑥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⑦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기준을 제시하면, 각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관계없이(특히 국립학교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 이를 우선 적용하는 규정 제시 ◦ 이 법에 의해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를 결정하면, 각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관계없이(특히 국립학교 및 특성화 중·고등학교) 이를 우선 적용하는 규정 제시 ◦ 국립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 주체를 ‘교장’에서 ‘교육감’으로 하고, 국립학교에 대한 학생 배치도 관할 특수교육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학교가 학생을 선별하기 보다 관할 특수교육위원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국립학교에 배치 심사를 하고 관할 교육감이 배치 결정을 하는 체계 구축 ◦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항에서 국립학교의 장 내용을 삭제하였으므로, 제4항에도 관련 내용도 함께 삭제 항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p>제18조(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보호자는 초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 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이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p>	<p>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p> <p>제31조(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의 보호자는 초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 영이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 <p>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평가된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당 조항 수정·장애영아의 배치 또한 기존 법률 제17조 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와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를 따름을 고려하여, 장애영아가 가까운 영이학급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칙 규정. 이를 통해 장애영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영이학급 신증설을 촉진하고자 함</p> <p>기준 특수학교 유치원과정에 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영이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만 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치원과정과 영이과정을 각각 분리하고, 특수학교가 영이학급의 설치 주체임을 명료하게 표현하고자 함</p> <p>장애영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치원(영이학급 설치)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수용·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을 추가하여 규정</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시행)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통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영아에 대한 순회교육의 시행 주체가 교육장임을 명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을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에서도 실시 가능하도록 제41조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신설〉	제32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성격, 이수 대상, 각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문서는 분리나 차별 없이 정하고, 제2조제9항, 제37조 및 제28조제1항제11호 등에 대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행법과 같이 교육과정의 방향과 내용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기존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관련 사항을 법률로 이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환경에 따라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서가 초·중등교육과정과 통합되면서 특수학교 환경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 모두 개정된 교육과정의 국가 교육의 방향성과 추진 일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며, 문서의 통합을 통해 장애, 비장애 학생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기존 제2조 제9항(전로·직업교육)과 제15조 제1항 제11호(중도복지장애)의 경우 초·중등교육과정(일반 교육과정)을 수성한 교육과정으로는 그 실효성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직업교육과정, 중도지적장애·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생활기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근거 마련 필요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장애 교육대상자의 학습 특성 및 학습 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특수 교육부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기존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관련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정의함	교육부령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기존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 관련 사항의 근거를 법률로 정의함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영어교육과정과 전환교육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환경에 따라 교육과정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
〈항 신설〉	<p>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 반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교육 배치환경 등의 학습 특성과 학습능력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수정(조정)하여 지도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한 평가조정이나 대안평가 등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 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와 학습 특성으로 인한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p>
〈항 신설〉	<p>④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침을 마련하고, 교과별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 학교급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영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 간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p>
〈항 신설〉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⑦ 하위법령 위임 규정 제시</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시행)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조문 신설〉	<p>제34조(평가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제3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성취한 학습의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기록해야 한다.</p> <p>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교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p> <p>③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당한 평가를 실시하고 기록하는데 필요한 평가관리와 교과별 평가방법 및 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식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조항 개정 이후 「초·중등교육법」제25조도 다음과 같은 헌법을 신설하여야 함 “제25조(학교생활기록)⑥ 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를 할 때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평가조정 및 매인평가 방법 등이 적용하여 성취한 결과를 기록한다.” 교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 과정을 공식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규정, 자료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사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제35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제2조제6호에 따라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관한 각종 사책을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장의 통합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적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조문 번호 수정 일반학교의 장 및 일반학교 교원에 대한 통합교육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장과 일반학교 교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통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시행)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항 신설〉	<p>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급의 학생수 또는 학교의 학생 정원 감축, 교원의 추가 배치,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통합교육 지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통합교육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합학급 학생수 감축, 교원의 추가 배치, 관련서비스 인력 확충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가 규정 특수학급 이외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항 신설〉	<p>⑥ 특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인적, 물적 지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임 이와 같은 개정안과 함께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수학교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 필요 시각·청각장애 관련 특수학교가 시각·청각장애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센터가 일반학교의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제안(본 개정안 제20조제3항에 반영)
〈항 신설〉	<p>⑦ 제4항의 통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교육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p>제36조(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팀의 구성원 범위 확대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행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p>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의 장,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담당 교육전문직 등이 참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2. 특수교육교원 3. 특수교육교원 4. 일반교육교원. 단,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헌함 5. 제37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단, 종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지원팀에 헌함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p>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운영 과정에 사의 학생 참여권 보장, 자기결정능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학생의 참여를 새롭게 제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이외에도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사,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p>③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이상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개최하고,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기별 최초 회의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록지원 또는 진로·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도종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일반학교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결정 및 인권 보호·증진 지원 5.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지원 <p>〈항 신설〉</p>	<p>◦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기별 최초의 협의회는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로 명시</p> <p>◦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 정애정도 등을 고려한 지원 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지원, 자기결정 및 인권보호·증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p>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p>	<p>◦ 개별화교육계획 명칭 변경 사항 반영</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 한다.	⑤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 한다.	◦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항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다.	◦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을 기준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개인별교육지원팀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함
〈항 신설〉	⑦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은 개별화교육지원 계획에 필요한 예산 소요 내역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예산 소요 내역이 포함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와 같은 예산을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에 편성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예산을 해당 학교에 편성·교부·배분하여야 한다.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의 자체 예산 편성, 지원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함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서식 및 운영 절차, 제4항에 따른 송부 및 보관 방법, 제8항에 따른 별도 예산 요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문서 양식 등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법적 문서로서의 실효성 강화 ◦ 항 번호 수정 및 항 추가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37조(진로·직업교육의 지원)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 이해, 진로 탐색·설계 및 취업·창업·자립생활 등 을 할 수 있도록 진로설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창업 지원, 졸업 후 사후관리 지원 및 자립생활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진로교육법」의 진로교육 내용과 연계하여 기존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관련 내용 재구성 ◦ 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활, 훈련 용어는 삭제하고 교육 중심의 용어로 재구성 ◦ 진로교육은 유치원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으므로 중학교 과정 이상으로 한정한 기준 조항 삭제 ◦ 제1항은 진로·직업교육의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현장실습, 진로·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관련 위임 규정은 별도 항으로 분리하여 구성 ◦ 조문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哼 신설〉	<p>② 고등학교와 전원교육과를 운영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각급학교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p> <p>④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실습을 추가하여 학령기부터 적립한 실습 및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 진로·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 자격에 대한 위임 규정을 별도 흥으로 분리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 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p>⑤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수정에 따른 지구 수정(중학교 → 각급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 → 진로·직업교육) 진로체험 등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명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포함하여 각급학교에서도 필요 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p>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학에 입학하고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준비에 따른 진학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학입학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부유형에 적합한 대학 입학 수험편의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시스템 구축 및 수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학지도 명문화 대학 진학지도에 필요한 적립한 정보 제공 및 정보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대학 입학 시 장애에 따른 각종 편의 제공 명시 대학 입학준비 지원을 위한 행·재정 지원 명시
〈조문 신설〉		
〈조문 신설〉	<p>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서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의 기회를 즐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여가, 문화, 체육 활동은 제33조에 따른 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직업교육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등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도 여가문화, 체육 관련 교육 지원 확대 등에도 제시되어 있음),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제공 및 참여 방안,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증진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협력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 ⑤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 필요 사항은 허위법령으로 위임	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협력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 ⑤ 특수교육대상자의 여가,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구체적 필요 사항은 허위법령으로 위임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① 각급학교, 고등학교 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생들에게 효과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환교육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환교육과를 설치할 각급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기준 전공과를 전환교육과로 명칭 변경 ⑤ 현행 전공과에 대한 병목 현상 해소 등을 위하여 전환교육과 설치 대상 교육기관을 특수교육기관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여, 전공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증진하고자 함 ⑥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실생활중심의 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교육과의 형태 및 운영을 다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제시 ⑦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국립학교) 또는 교육감(공, 사립학교)이 전환교육과를 지정하도록 하고, 고등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전환교육과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환교육과를 설치한 각급학교 및 유관기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교육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환교육과의 지정·위탁 절차, 전환교육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의료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지구 수정 ④ 제1항 규정에 따른 지구 수정 ⑤ 「의료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
86	〈항 신설〉	으로 재활전공과 교육과정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는 전회교육과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이 법에는 직업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제시하였으므로 (교육부장관 고시),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라 함은 시각장애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이로 영역'임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 관리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기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시행 주체의 표기 순서 조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수정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포함하여 특수학교 내 장애유형을 달리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조문 번호 수정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순회학급을 일반학교에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학급의 설치 근거를 마련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방	◦ 통신수업, 가정학습 등을 수업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방문 수업(학교 등교 수업 포함) 중심으로 순회교육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순회교육대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순회교육에 필요한 인력 배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허위법령에 명시하려는 것임 ◦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문 번호 수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하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 학급 설치의 주체를 학교장에서 국립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사립의 경우 교육감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공적 책무성 강화 ◦ 영어 과정 및 전환교육과에 대한 학급 설치 기준 신설 ◦ 영·유·초·중·고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을 3·3·5·5·6명으로 현재보다 각 1명 감축함으로써 과밀학급 해소 및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 ◦ 조문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 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허용 조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 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허용 조정할 수 있다.	국립학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을 추가
〈항 신설〉	④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을 대상으로 제54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감축 기준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
〈조문 신설〉 * 기준 시행령: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① 각급학교와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②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현장의 특수교육교원 배치의 어려움 해소 및 국가의 책무 강화를 위해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법률로 이관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배치 기준 하향 조정 ※ 교원 배치와 관련해 기존 초중등교육법 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2항 개정 필요
〈항 신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및 일반학교에는 통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중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에는 진로·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과 일반학교에는 통합교육 담당 및 특수교육 담당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원칙 제시 진로·직업교육 담당 특수교사 배치 원칙 별도 제시
〈항 신설〉	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조치이므로, 이와 관련된	특수교육교원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위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특수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조치이므로,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향 신설〉	<p>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생활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보호자상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목적과 원칙을 제1항에 제시 ◦ 조문 번호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정의 규정에 따른 조치)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p>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각각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정보제공,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가족지원 서비스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지원 서비스와 협력하여 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규정 추가 ◦ 항 번호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자격인 언어재활 영역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보행재활 영역을 추가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치료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항 번호 수정
〈향 신설〉	<p>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지원(보완대체의 사소통체계 등을 포함한다), 수어 또는 문자 등의 통역 지원, 점액지원, 심리·행동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⑦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구 또는 보조공具를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중복장애학생,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학생 등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규정 ◦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기타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내용 중 일부를 이 조항으로 이관(심리행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지원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을 법령에 규정 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 및 배치 여건을 형성시키고자 함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 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p>⑧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지원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⑨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학교의 장」이 주체가 되었던 서비스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일원화하여 교육부(국립학교 지원)와 시도 교육청(공사립학교 지원)의 책무성 강조 ◦ 학습보조기와 보조공학기기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어 학습보조기를 보조공학기기에 포함하여 보조공학기기로 통칭하여 규정하며, 보조공학지원은 기기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척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 보조인력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체를 마련하여야 한다.	⑧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척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를 지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조공학 지원의 설계와 지원과 평가까지 포함되므로 보조공학서비스로 통칭하여 제시(현행 법령에서는 '학습보조기'와 '학습보조기' 용어가 혼재되어 있음) ° 항 번호 수정 ° '극급학교의 장'이 주체가 되었던 서비스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일원화하여 교육부(국립학교 지원)와 시도 교육청(공사립학교 지원)의 책무성 강조 ° 항 번호 수정 ° '극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⑪ 제9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항 번호 수정 및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 ° 항 번호 수정 ° 항 번호 수정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⑪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항 번호 수정 ° 항 번호 수정
⑨ 신설)	⑫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찰사·도지사와 협력하여야 하고, 매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만이 아니라 시장·도지사 공동책임을 법에서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방법 제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상담지원, 제3항에 따른 기축지원,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 보조인력(지원인력)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의 질 높은 교육 활동 지원 및 인권친화적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 따른 통역지원·점액지원·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 교육 활동 지원, 제7항에 따른 보조공학서비스 제공, 제8항에 따른 통화지원, 제9항에 따른 기술사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인권친화적 교육 활동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따른 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교육 활동 지원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각급학교 배치 전과 배치 후를 각각 구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⑨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조문 신설〉</p>	<p> 따른 통역지원·점액지원·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 교육 활동 지원, 제7항에 따른 보조공학서비스 제공, 제8항에 따른 통화지원, 제9항에 따른 기술사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인권친화적 교육 활동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4항에 따른 치료지원, 제5항에 따른 행동지원, 제6항에 따른 특수교육 활동 지원 등의 인력에 대해서는 각급학교 배치 전과 배치 후를 각각 구분하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⑩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p>
<p>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투약, 기관출입, 유루관, 경관병양 등과 같은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약사를 두 수 있다.</p> <p>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처방 또는 자문을 받아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순회 보건교사 등(이하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고, 특수교육교원과 협력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및 특수교육교원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규정 필요 한 번호 수정 및 조문 내 인용 항 번호 수정</p> <p>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건강관리 지원 조항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가 아닌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였음 (책임소재, 면책 규정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와 같이 규정)</p> <p>보건교사보다는 학교 의사 및 간호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제안됨에 따라 우선 의료인을 먼저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 또는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등을 배치하고,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p> <p>기존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조항을 준용하여 건강관리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교원이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p> <p>중도중복장이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건강 관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가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정야유형을 명시하지 않음</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③보건교사 및 특수교육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가피하게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면책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학교보건법」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조항 준용)	보건교사, 특수교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가피하게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면책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학교보건법」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조항 준용)
④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다.	④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또는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인력으로 둘 수 있다.	간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학교보건법」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조항 및 시행규칙(간호사 자격 소지 보조인력 배치) 준용)으로써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의 특수교육기관과 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⑥각급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기관은 각급학교 내의 건강관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각급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찰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때 의료기관은 각급학교 내의 건강관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장이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각급학교에 필요한 인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⑦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⑦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간호관리 지원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5장 고등교육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p>조문 번호 수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신설〉	제48조(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①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 장애학생 무상교육의 범위 및 실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까지 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어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원전무상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충족·담당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둘로써 이를 같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9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충족·담당하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둘로써 이를 같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같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 수정 및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2021. 3. 23.)	③ 대학의 장은 장애지원 행정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 지원 업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의무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가 대학 내 모든 부서와 협력하여 교수학습 생활복지·취업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문인력 배치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평가 지침을 준용하여 배치하고,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연수) 의무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 학생지원센터의 대학 내 권한 및 기능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항 신설〉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항 신설〉	<p>⑤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및 인권실태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법률 제13조 교육복지실태조사(인권보호 포함)에 근거한 대학자체조사 관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 접근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p>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p>제50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 접근 지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p>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
〈항 신설〉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지닌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및 수험편의 지원, 학습 지원, 대학 생활 중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입학이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보장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p>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p>	<p>제51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p>
〈조문 신설〉	제52조(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②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개발 2. 장애유형별 고등교육 지원 지침 개발 3. 장애대학생의 복지 및 취업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와의 협업 4.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업무 담당자의 연수 5.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6.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7. 그 밖에 고등교육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③ 고등교육센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 교육전문직 등을 둔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6장 보직 및 벌칙	제53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3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조문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p> <p>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조문 번호 수정
<p>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p> <p>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p> <p>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p> <p>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처벌</p>	<p>제34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p> <p>1.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p> <p>2.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사항</p> <p>3.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p> <p>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처벌</p> <p>5. 제43조제4항에 따른 학급설치 기준 위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조문 번호 수정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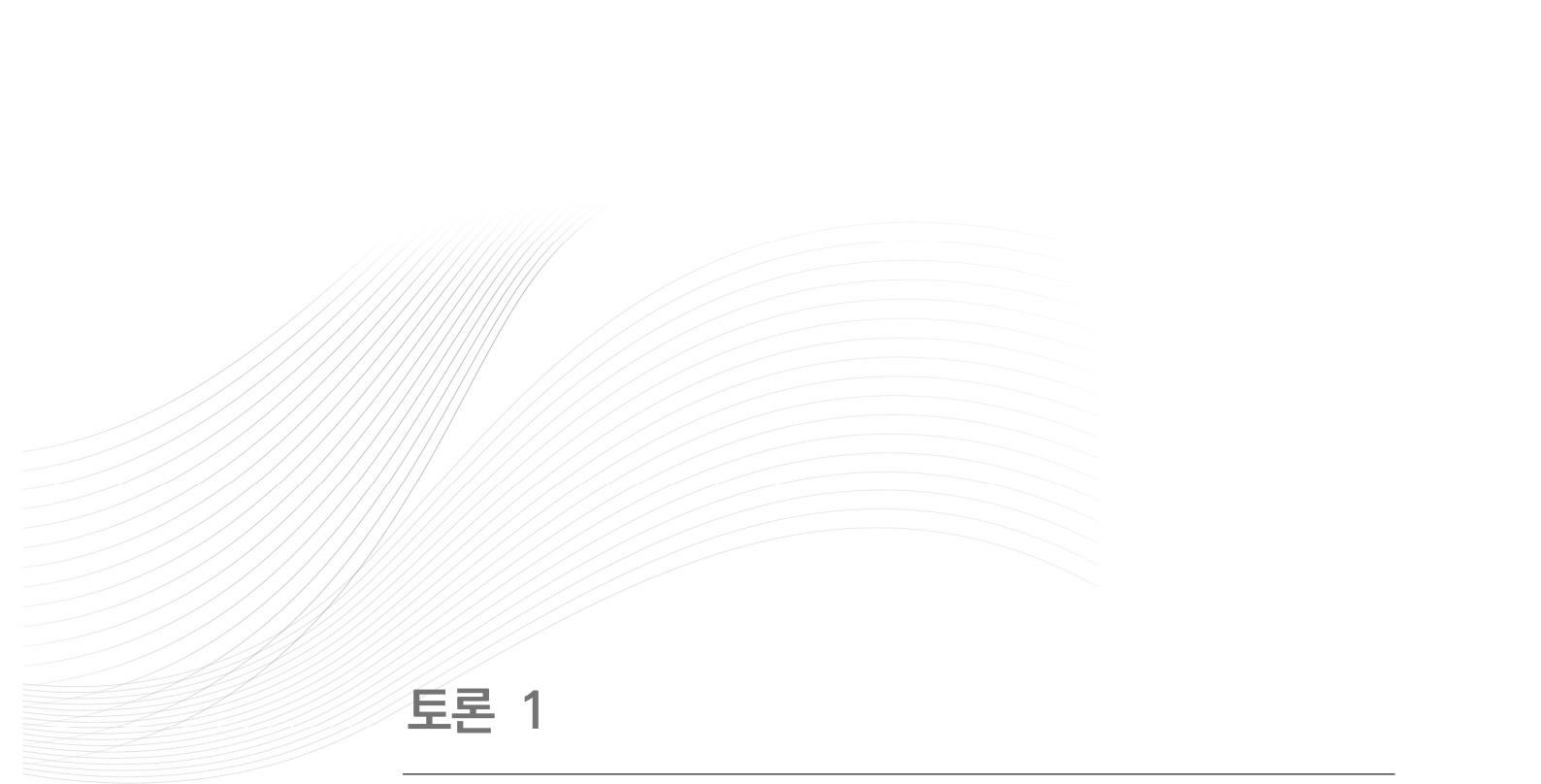
◦ 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 조문 번호 수정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주어야 한다.</p> <p>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조문 신설〉</p>	<p>주어야 한다.</p> <p>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p> <p>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심사청구자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심사청구자에게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청구자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심사청구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심사청구등"으로 본다.</p>	<p>◦ 조문 번호 수정,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p>
		<p>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액을 이유로 특수교육</p> <p>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액을 이유로 특수교육</p> <p>◦ 조문 번호 수정</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번역)	개정안	개정 사유
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대상자의 입학 또는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 또는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호 신설〉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3.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정이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의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요구는 입학 거부, 전학 강요·거절 등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되므로 입학 거부, 전학 강요 관련 벌칙과 동등한 수준의 벌칙 기준 제시(기존 제38조의2제4호 내용을 이 조항으로 이관)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자별의 금지) 개정에 따라 벌칙 규정 정비
1. 삭제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보호자의 보조·통행 등 참여를 요구한 자 또는 개인별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1.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차별하거나 보호자의 보조·통행 등 참여를 요구한 자 또는 개인별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정이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을 한 자 〈호 신설〉	제57조(벌칙) 조항으로 이관 제57조(벌칙) 조항으로 이관
〈호 신설〉	2.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차별을 한 자 3. 제55조를 위반하여 심사청구를 방해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삼사청구의 취소를 강요하거나 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취한 자	심사청구 절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취소를 강요당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받는 것에 대한 벌칙 규정을 부과함으로써 불복 절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조문 신설〉	제59조(양벌규정) 범인의 대표자나 범인의 대리인, 사	치별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p>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및 제58조의 우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우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마련하여 보호·감독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p>



토론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토론 자료

전병운 회장(특수교육학회, 공주대학교 교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 토론 자료

전병운 회장(특수교육학회, 공주대학교 교수)

다음 토론 자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한국특수교육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특수교육지원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사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의견은 장과, 조별로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4조 차별의 금지 2항(2항이 두개인데, 두번째 2항입니다)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육대상을 지원한다는'.... 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지원이 중복되어 있고, 보조인력과 교사의 역할 경계가 매우 모호합니다. 이러다가는 보조인력과 교사가 대등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현장교사들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보조인력" 용어를 사용하여 보조인력의 역할을 분명이 명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또래와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포함한'을 '비롯한'으로 수정 제안: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 '비롯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 가운데서 앞의 것을 첫째로 삼아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도 포함하다'로 통합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 금지나 교육적 요구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비롯한'이 적절하다고 봄.
		7.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주요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서 '필요한 내용과 절차'보다는 '필요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절차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음. 또한 '주요 구성원'이라는 말도 애매모호함.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	'실시하기 위하여'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수정하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2호에 따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는 것이 제6호 통합교육의 정의에 더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3 “전환교육과”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취업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가능한 장애학생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적 접근으로 학령기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므로 ‘전공과’를 ‘전환교육과’로 명칭을 개정할 경우 전환교육의 원래 개념을 축소 또는 오해할 위험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 문장이 어색하고,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명시할 필요가 있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14. “통합학급”이란 제12호에 따른 각급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또래의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한 학급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변경함이 특수교육법상 용어 통일을 위해 필요해 보임. - ‘일반학생’과 ‘비장애학생’ 용어 통일 필요 제5조 2항 5호에서는 ‘비장애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데, 이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 1조에는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다른 법의 내용을 새로운 내용의 추가 없이 그대로 가져와 조항으로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② 항 차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말한다. 이하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으로 부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장차법 제4조가 차별을 말한다고 하고 차별금지라고 하면서, 다시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법에서 말하는 차별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라면 표현 방식을 괄호가 아니라 단서 등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을 담당하거나 특수교육대상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배제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차별행위를 판단하거나 이를 시정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간 의미로는 알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아 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의 배제, ~에서 불이익, ~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제5조 (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제5조 ①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침해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①에서 '포함한'을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으로..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특별법 체제가 아니고 일반법 체제인데, 특수교육법에 있는 조항은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법률에 만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조항이 오히려 타법의 유리한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장차법 벌금이 더 높은데 특수교육법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
	제11조 (의무교육)		
	제12조 (특수교육대상 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또는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추가 요구 또한 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유치원 신설 시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유 : 유치원 특수학급 통합 유치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교가 매우 부족하여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 공교육을 통한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 개정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평가와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그 기관 운영 시스템이 매우 열악합니다.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 즉, 학교 중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3조 (보호자의 의무 등)		- 취학의무의 면제가 필요한 제도인지 검토 필요합니다. 면제라면 국가의 책무도 면제되는 것인데, 만 17세까지는 면제가 아닌 유예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국가가 책무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제14조 (특수교육기관 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정 분야에 대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화 특수학교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특성화 특수학교'를 '특수목적 특수학교'로 용어 수정 요망.....2020년 교육부 정책연구로 특수목적 특수학교로 용어 정리한 바 있으며(특성화와 특수목적을 포괄하기 위해 특수목적 특수학교로 용어 사용), 중학교는 특성화가 맞으나 고등학교는 특수목적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직업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등이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 특수'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학교'로 용어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중등교육법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15조 (위탁교육기관 의 변경신청)		
	제16조 (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 특수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원과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상담 및 연수 실시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7조 (교원양성기관 등의 책무)	<p>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사의 자격검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 ② 교원 양성을 담당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원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 ①번이 되면 ②번은 실현 가능하므로, 교원양성 기관의 책무까지 주체를 넓힐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②번이 포함된다면 교원양성기관의 책무 등 이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각 주체의 해석, 법률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제21조 (국가장애인 교수·학습지원 센터 등)	<p>④ 교수학습센터는 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원본 및 디지털 파일 형태로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도서의 발행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수학습센터에 납본하여야 한다.</p> <p>⑤ 교수학습센터는 제4항에 따라 교과용도서 등을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납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본한 교과용도서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⑥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제4항에 따른 교과용도서의 대체 자료를 교수학습센터에 요청할 수 있고, 교수학습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p>	<p>- 교수학습센터의 규정이나 내부 운영 지침 성격의 조항들이 많이 있어 이 법의 위상 및 성격과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이러한 내용까지 법으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p>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⑦ 제1항에 따른 교수학습센터 설치운영 및 제4항에 따른 교과용도서 납본 절차 및 보상, 원본데이터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장애인인권교육의 실시)		
	제23조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등)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이 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교육권 보장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우선적으로 투입, 지원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 무관해 보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항의 이름을 '제23조 학교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 등'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 다만, 학교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어야 하며, 아동은 모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선적'이라는 말을 법 적용의 주체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도 의미가 전달된다고 봅니다. 앞 조항에 나왔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동과 장애아동을 선후차적으로 보지는 않고 항상 '특별한 보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24조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p>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취학 및 진학 등에 대한 정보를 <u>효과적으로</u>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취학 또는 진학 설명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보호자가 특수교육 대상 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지원, 가정 내에서의 특수교육 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자의 특수교육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 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상담 지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는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이하 학부모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조항에서 규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용이 너무 원론적이며, '국가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라는 기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지만 국가 차원이라면 그 역할이 오히려 애매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둔다고 하여도 특수교육대상학생학부모지원센터가 타당하지 않은지요?
	제25조 (순회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회교육 시행 주체의 순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 →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 일반학교에도 순회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순회교육이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제3장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p>하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항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26조 (특수교육실태 조사)		
	제27조 (특수교육대상 자에 대한 조기발견 등)	<p>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영유아 또는 학령기 아동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복지지원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⑦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지원을 위한 평가 도구 등을 기초로 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5월 12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안)–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장애아동이 건강하고 차별 없이 권리와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동으로 장애아동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월12일에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안과 부처 간 정책추진방식에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안)을 확인하여, 법률 간의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장애나 특수교육대상자 여부를 진단평가하는 내용을 넘어,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원에 중점을 둔 도구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예, SIS-C).
	제28조 (특수교육대상 자의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중도중복장애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중복장애와 별도로 시청각장애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 수정 사유는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는 특성과 요구가 매우 다르므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 12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시청각장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제22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 참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p> </div>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p>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의사소통·보행·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p>
	제2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할 때에 학생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라는 말이 대상자의 연령이 어리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되지 않으면 너무 모호한 표현입니다.
	제31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②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 영아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영아학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라고 명시하여, 영아학급 신증설 촉진을 위한 근거까지 마련해주신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3세 미만 영아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할 때 특수학교의 영아학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들을 어떤 형태로 배치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영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면, 1:3의 영아 대 교사 비율 이상의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장애특성에 따라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학교의 경우에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아학급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유아특수학교의 기능과 특성을 생각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유아중심으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유아특수학교에 영아학급을 증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칙이나 시행령 등으로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을 위한 유아특수학교의 신증설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3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⑤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 승인을 받아 학교급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영유아교육기관과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 간 특수교육대상자의 발달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교육기관”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명칭이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명칭의 사용이 필요하며, ‘영유아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안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관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제34조 (평가 등)		
	제35조 (통합교육)	<p>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교육 지원의 질적 제고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실을 담당하게 될 교사의 전문성 확보(특수교육 전공교사) 조항이 명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36조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p>⑥ 특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학교의 장이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지역사회통합 준비를 위해 특수학교 장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와의 통합교류 노력을 해야 함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류가 법적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일반교육교원/관리자 장애인권교육 의무화, 즉, 통합교육교원 및 관리자에 대한 연수체제 강화, 의무화와 예비교원 양성기관의 통합교육 책무성 교육 강화가 필요 하므로 이를 보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37조 (진로·직업교육의 지원)	<p>③</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일반학교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결정 및 인권 보호·증진 지원 5.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교육의 핵심은 장애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따른 교육계획과 이를 위한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3항에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인 3항의 1호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을 '특수교육 교육계획 및 지원'으로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도 IEP를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때 통합학급 장애학생의 통합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지금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이라고 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생애주기에 따라 진로·직업교육을 포함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가능한 어릴 때부터 전환교육을 고려해야 하고 전환이 진로 및 직업교육을 아우르는 것임을 고려하여 '전환교육 지원'이나 또는 '개별화전환교육계획'을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 IDEA 2004에서도 전환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16세부터는 IEP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	조	개정 내용	토론(수정) 의견
제5장 고등교육	40조 (전환교육과의 설치·운영)	'전환교육과' 명칭 신중히 결정 필요	-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가능한 장애학생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적 접근이므로 전공과를 전환교육과로 명칭을 개정할 경우 전환교육의 철학 및 원래 개념을 축소 또는 오해할 위험이 있어 우려가 됩니다. 중등이후전환(교육)과 등 의미를 분명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어변경은 현장교사 및 관련인의 의견을 재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1조 (순회교육 등)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항과③항의 내용은 원격수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부등교하는 행동문제를 보이는 정서장애학생과 지적장애학생도 많습니다. 향후 이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 본다면 순회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부 등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중간 단계들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제50조 (편의제공 등)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을 지닌 장애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 확대 및 수험편의 지원, 학습 지원, 대학 생활 중 각종 편의제공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대학 입학 기회 확대'는 '고등교육 기회확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 발달장애 고등교육은 선언적인 조항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 제시가 필요합니다. 장애대학생 선발을 위한 조항보다는 졸업이나 학위과정 여부, 학점 취득 조건 등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대다수의 외국은 비학위과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입학과 편의 제공의 문제보다도 더 포괄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으니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2

특수교사가 학생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특수교육법!**

이은경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특수교사가 학생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특수교육법!

이은경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2008년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특수교육 현장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16명 아니 그 이상까지도 한 학급에 배치되었던 학급당 학생수가 2021년 지금은 4-6-6-7의 법정정원을 그나마 준수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고, 일반교실 크기의 특수학급 교실을 가지게 되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겨서 학급교실에서 특수교사 1인의 역량으로 불가능했던 가족지원, 직업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일반학교에서는 더 이상 특수 교육대상학생이라고 교실에서 쫓겨나는 일이 적어졌고, 학교마다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 계속 진행중인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것만 변한 것은 아니다. 교실 안에서 만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정도도 증증화되어가는 변화도 있다. 학력위주의 서열화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가기 위해 학교교육은 집중되어 있다. 학생선택중심교육과정과 자율학기 또는 자율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시스템과 교육과정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 시기별로 발생되는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교육취약계층으로 몰리고 있으며, AI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게 현재이다. 과거의 완료된 변화와 현재부터 진행될 변화에 대해 특수교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흔히들 교육의 3주체를 학생, 교사, 학부모(보호자)라고 한다. 학생과 교사는 학교안에서, 학부모(보호자)는 학교 밖에서 교육을 만드는 주체이다. 3주체의 협업과 학교 밖 지원이 잘 이루어질 때 특수교육의 높은 질적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주체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학교와 교실현장을 배경으로 발제자료를 검토 해 보았다.

먼저 검토 시 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싶다.

1. 교사와 교실에 대한 지원과 시스템 없이 특수교사의 열정페이만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사는 오로지 학생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과 교육활동 외의 업무 차단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학생과 세밀하게 관계할 수 있는 교실환경과 근무환경을 말한다.
2.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대하지 않고, 법률로 교사의 전문성을 통제하고 의무조항으로 남기려고 하는 신설조항들이 많이 있다. 또한 학교장이 해야하는 책임들은 현장에서는 그대로 특수교사에게 업무로 다가온다. 특수교사가 해야하는 일과 교사가 하지말아야 할 일의 구분을 두어야 한다.
3. 교육기관에서의 역할과 지자체 지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학부모(보호자) 입장에서는 교육기관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기관임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교육기관이 교육과 돌봄 그리고 학교밖활동 지원에 에너지를 쏟다보면 결국 오로지 학생과 교육활동에 집중되어야 할 에너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돌봄 및 치료지원과 가족지원 대한 지자체 완전 이관과 의료행위가 필요한 건강관리는 병원에서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일관된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 조항(기존조항, 신설조항 모두)에 해당하는 근거법령을 제시함으로써 길어지고 복잡함으로 인식되어짐에 따라 간단과 명료성을 추구해야한다고 본다.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발제 자료 안	검토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을 교육과정으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각자 단어는 교육과정보단 개인별교육과정의 의미를 시사함으로 삐제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무사 또는 지도사의 명칭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 제공, 의사소통지원, 행동지원, 보조공학서비스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무사 또는 지도사의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될 정도의 관여로 갈등상황을 야기하고 있음. 지원인력이란 단어 변경 반대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에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합교육의 관점의 방향.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이나 편견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주요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기준계획"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 및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주요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특수교육이 사람을 개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 개인별맞춤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능을 익히는 것이라고 볼 때 개별화교육계획의 명칭 변경 필요함. 개별교육기준계획으로 변경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11호에 따른 특수학급,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제11호에 따른 특수학급, 제20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2호에 따른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특수학급은 통합된 학생들이 분리되어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수학급에 대한 정의 재 정립 필요.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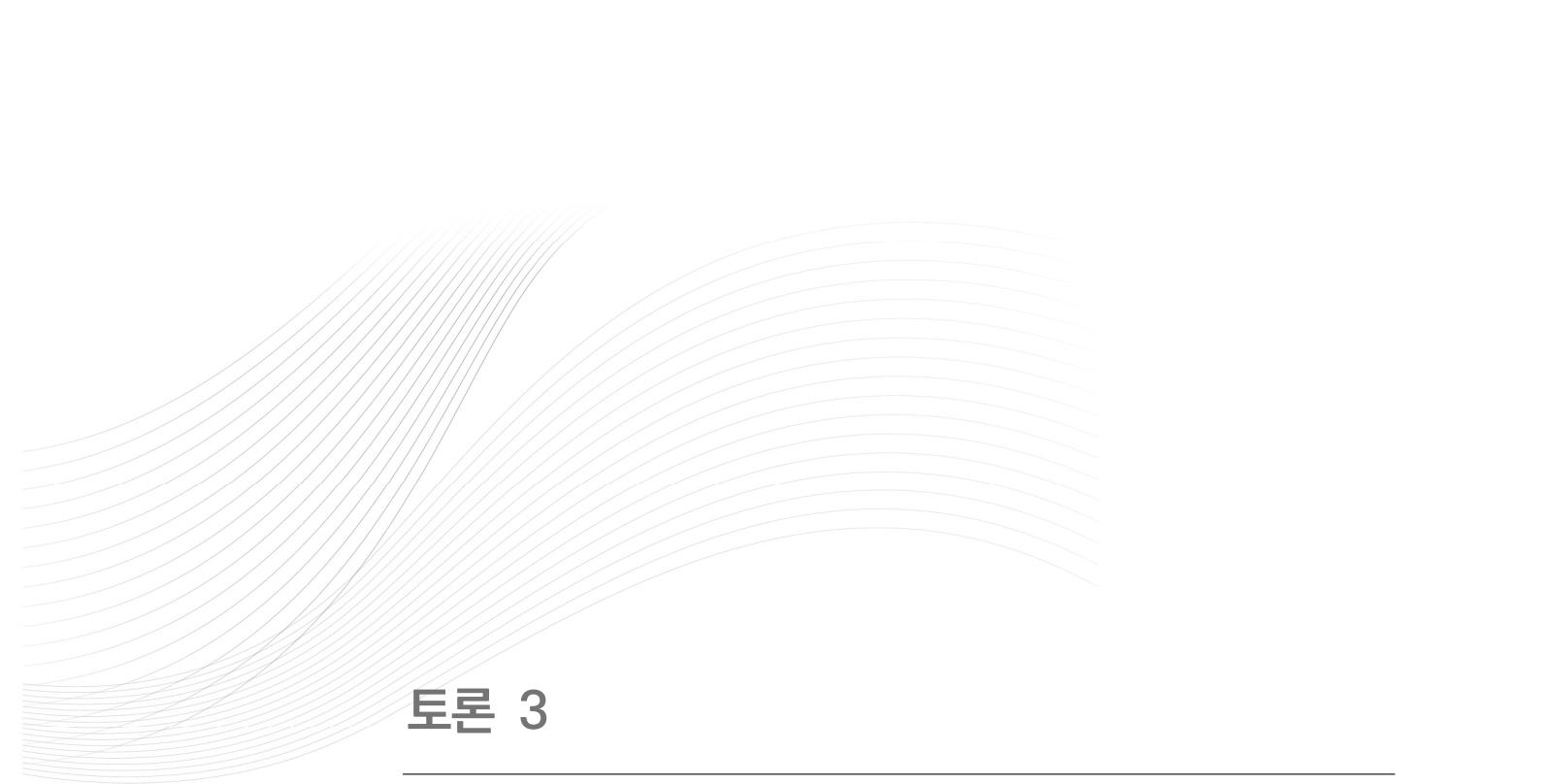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발제 자료 안	검토 안
〈조문 신설〉	제3조(아동 최선의 이익 실현) 이 법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이익이 실현되도록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의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 통합교육지원실을 추가 정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별도실을 말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지원 제11조(교원의 자질형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특수교육원의 설치 운영 시·도 특수교육원의 설치 운영	조항 신설의 필요성 검토. 이미 대통령령이나 각 지역 조례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임.
제21조(국가장애학생교수학습지원센터 등)	국가특수교육원과 국립특수교육원의 구분?	국가와 연수의 내용이 없음. 통합교육관련 교육 및 연수를 수를.....
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	?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발제 자료 안 제23조(재난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	검토 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11. 중도중복장애 제16조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 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리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지원 방법 및 내용,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 제37조에 따른 전로직업교육,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리서비스, 제46조에 따른 건강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지원내용에 건강관리지원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적절성과 우려가 됨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3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배치기관으로 추가함에 동의함. 그러나 영이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교육을 위한 전환교육 대상학생도 포함하여야 함.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32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34조(평가 등)	제32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34조(평가 등) 제35조(통합교육)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특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신설의 필요성 검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특수교육 교육과정임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것은 일반교육에 준해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봄. 교육과정의 대강화와 자자체기관으로의 시대성이 역행하는 조항임. 따라서 현행 유지 필요함. 개인별교육지원개편에 이미 거론되어 있음 통합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의무근거마련이 필요하다.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감각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거점
제21조(통합교육)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발제 자료 안 자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한 비용 또는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검토 안 학교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음. 특수학교장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일반학교장의 책임을 간접하는 경우로 해석됨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제36조(개별화교육지원체계 수립 등) ①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통합학급임용교원, 중학교 과정 이상인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인별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 2.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3. 특수교육교원 4. 일반교육교원. 단,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5. 제37조에 따른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단, 종학교 과정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제36조(개별화교육지원체계 수립 등) ①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통합학급임용교원, 중학교 과정 이상인 경우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인별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기족지원 또는 진로·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일반학교의 경우 통합교육 지원 4. 특수교육대상자의 자기결정 및 인권 보호 증진 지원 5.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지원
	⑥⑦⑧⑨항 신설	⑥NEIS상 개인별교육지원계획작성을 의무조형으로 구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발제 자료 안	검토 안
제23조(진료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37조(진료·직업교육의 지원) ⑦⑧⑨신설 필요성 검토	정하는 것에대한 우려, 자율로 유지 ⑦⑧⑨신설 필요성 검토
제38조(대학 입학 준비 지원)	제39조(여가·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p>제41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교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p>제44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교 설치 기준) ①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유치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3명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3명을 초과하는 경우 3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4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5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p>제45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교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교의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3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3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초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중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5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고등학교 과정 : 특수교육대상자가 1명 이상 6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p>제46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교 설치 기준)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도중복장애 등으로</p>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발제 자료 안	검토 안
5. 전환교육과 : 고등학교 과정을 준용한다.	<p>보다 강화된 지원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1/2의 범위 내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p> <p>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4조(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p> <p>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치원 및 일반학교에는 제35조에 따른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p>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p>제45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p> <p>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치료지원영역을 모두 지자체의 발달재활서비스로 관리해야 함. 따라서 제공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한나라로 수정필요함. 교육기관은 교육에 집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이관으로 방향전환 제안함</p>
제46조(건강관리 지원 등)		<p>보건교사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의료인이 아닌 특수교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학교안에서 행해지도록 근거를 두는 것은 많은 우려결과 반대함.</p>
제5장 고등교육		<p>고등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육권위원회가 제인한 발의안에 동의하고 있음.</p>



토론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토론회 토론문

정광윤 정책실장(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토론회 토론회

정광윤 정책실장(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본 토론회는 토론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검토

○ 법 제도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청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함

- 이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준수하기 위해 가급적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변경에 그쳐야 한다는 제약은 있지만,
- 특수교육법의 경우에는 그 일천한 역사를 고려할 때 보완점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한국 특수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 인권의식 향상과 통합사회 지향 등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고 미래 한국 특수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함
- 특히 학급 설치 및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의 개선은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특수교육교원의 교육권 신장에 직결되는 숙원으로서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에 필수적인 과제임

○ 또한 이번 개정안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문헌연구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을 상당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상은 어떠하며 법적 인 한계로 인해 그 발전이 저해된 점이 무엇인가라는, 법률 규정과 특수교육 실태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
- 그리고 특수교육의 주요 주체인 특수교육교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으나, 특수교육교원들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장애영역별로 다양한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개정안의 완성도를 드높이는 프로그램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요망됨

- 법규범에 현실을 끌어올리는 당위적이고 선도적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 법과 현실의 간극이 크면 ‘법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그렇지 않아도 현행 특수교육법 체제 아래에서 과밀학급과 기간제교사 등 법과 현실의 괴리가 적지 않음
 - 이는 정부당국의 노력 부족 탓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있음
 - 요컨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설득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됨
-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임
 - 법률 개정으로 인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이 가시화되리라는 기대가 있지만,
 - 교육당국이나 특수교육기관에서 개정안의 내용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 바, 각 개정 조항마다의 경과규정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지 궁금함
 - 특히 특수교육교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수교육교원에게 부여되는 교수·지도·행정상의 과부하가 심화됨으로써 새 특수교육법의 순항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특수교육교원 확충 문제가 새 특수교육법의 성패 및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 여하를 좌우하게 될 것임

2. 법체계상의 검토

가. 원칙론

- 국가는 법규범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체계적 구성을 지향함
 - 모든 법규범의 실질적 근간인 법률에서는 국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원칙과 기준, 절차, 그리고 핵심 정책수단을 포괄함
 -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 하는 것이 보편적임
- 개정안에는 하위법령에 위임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조항의 배치 또한 불규칙적이어서 다소 혼란스러움

- 반대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것 중 법률에 명시함이 바람직한 규정도 있음
-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와 교육과정 등 특수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함이 바람직함
- 이는 **특수교육법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유념해야 함**

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의 법률 규정 필요(개정안 제28조)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현행 법률과 개정안에서는 장애유형만 제시하고,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하위법령(대통령령)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음
 - 중요도를 고려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이 바람직함

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 관련 구체적 법률 규정 필요

- 개정안에서는 중도중복장애를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주에 추가했는데,
 - 이는 전혀 별개의 장애유형이라기보다는 여타 특수교육대상자와는 다른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하기 위해 별도로 범주화하려는 것임
 - 그럼에도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개정안 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제3항을 제외하고는 언급이 없음
 - 따라서 교육과정 운영,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 등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함

라.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법률 규정 필요

-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교육부령에서 정한다는 종전 규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변경하고 있는데, 이는 부적절함
 - 오히려 교육과정은 본질적 내용이므로 교육대상자에 따라 교육과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의2(교육과정)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내용도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안 제32조(교육과정 등) 제4항에서는 “학교의 교과(教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서, 이를 특수교육법에 명시할 수는 있겠지만,

- 여기서의 대통령령이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하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라면, 굳이 특수교육법에서 다를 실익은 별로 없으며, 특수교육에 특유한 교과용도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조항의 재배치

- 개정안 제22조(장애인권교육의 실시)는 그 내용이 유사한 개정안 제5조(인권침해 금지 및 인권보호 등) 다음인 제6조로 배치함이 원활한 구성임
- 개정안 제32조(교육과정 등)와 제33조(교육과정의 운영 등)는 동일한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같은 조에 배치함이 타당함

3. 내용상의 검토

가. 특수교육대상자 용어의 불일치 정정(법률명과 개정안 제28조)

- 현행 특수교육법과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 명명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서는 장애인만을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 제28조제1항제12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아니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함이 타당함
 - 혹자는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인 등’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발달지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나, ‘발달지체’뿐 아니라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경계선에서 있는 까닭으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정하는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특수교육계 내에서 다소 있음
 - 물론 이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명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며, 다만 특수교육의 외연이나 현재 및 미래의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그러함
 - 현행 법률과 개정안 모두 제1조(목적)에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함

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의 구체화(개정안 제44조)

- 개정안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생 3명당 1인”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특수교육교원 총 정원의 최저선을 그렇게 정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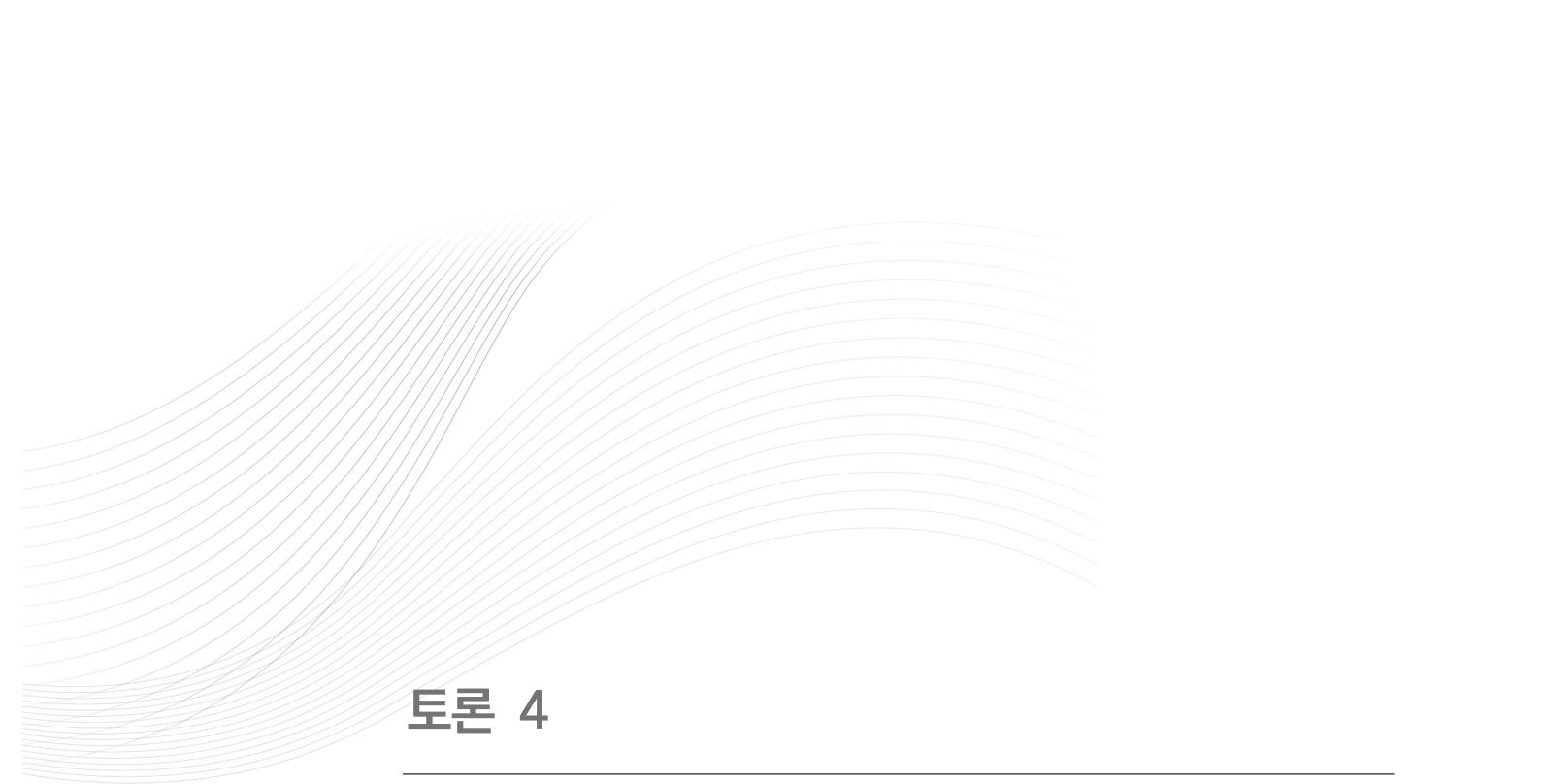
- 특수교육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별 특수교육교원의 정원을 각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목적과 학교급 구성,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장애영역 및 장애정도별 분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함
- 아울러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요지의 규정 또한 필요함

다. 용어 및 자구 수정

- 개정안 제1조(목적)는 “요구”라는 용어가 중복되므로,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을 “장애인 및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함
 - 현행 및 개정안 모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 제2조(정의)제1호에서 “충족시키기 위하여”를 “충족하기 위하여”로 수정
 - ‘충족하다’가 자동사 및 타동사이므로 이렇게 수정함이 원활한 표현임
 - 개정안에서는 특수교육의 용어 정의에 대해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교육”이라고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대로 하거나 ‘고안된’ 대신에 ‘마련된’으로 수정 필요(법률 용어의 간소화 취지에 맞지 않음)
- 개정안 제2조(정의)제7호 “개별화교육지원계획”에서는 책임 주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로 재수정 필요
 - “주요 구성원”을 “특수교육교원 등 개별화교육 관계자들”이라고 수정
- 개정안 제2조(정의)제11호 “특수학급”에 대해 현행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라고 개정한 바,
 - 각급학교에는 특수학교도 포함되므로 현행대로 ‘일반학교’로 함이 타당함
 - 제14호 “통합학급”, 제43조 등도 마찬가지임
- 개정안 제2조(정의)제13호 “전환교육과”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설치하는 전공 학과의 느낌을 주는 용어이고(전공과도 마찬가지임), 개정안 제43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1항제1~4호에서 영아 과정, 유치원 과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라 각각 표기하고 있는 것과의 통일성을 위해 “전환교육

과정”으로 함이 적합함

- 개정안 제4조(차별의 금지)제3항 “제1항 내지 제2항”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정함이 적절함
 - 요즘은 ‘내지’라는 용어 대신 ‘~부터 ~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인 데다, 이것은 3개 이상의 범위를 표기할 때 필요하고 2개의 범위를 표기할 때는 ‘및’이 적절함



토론 4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수교육법이 되길…

정순경 회장(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특수교육법이 되길…

정순경 회장(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현재 특수교육법이 의무교육 연한 및 무상교육 범위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수교육 수혜율 증가,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신설,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를 증진하고, 특수교육 기관 신·증설, 특수교육 교원 확충 등 장애 학생의 물리적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공헌한 부분은 맞으나 장애 학생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에는 부족하였습니다.

특수교육법 관련 이전연구에서도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성 지속해서 제기되었고 장애인 당사자와 학부모님들의 개정 요구가 꾸준히 있었으며 개정되는 특수교육법은 변화되는 사회에 맞추어 현장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특수교육법의 지난 13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 특수교육이 새로운 교육적 요구에 맞춰 성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목적이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서비스인데 지역마다 지원되는 예산 범위 따라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있는 관련 서비스가 현재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많아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되어왔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각각 교육과정과 교육복지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구분된 부분과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강조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 요구에 맞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상담 지원, 심리·행동 지원, 의사소통지원, 통역 지원, 점역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며, 치료지원에는 언어 재활, 보행 재활 및 발달 재활서비스를 추가되었습니다. 아무리 법을 좋게 만들어서 나열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바 같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서비스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부모교육 등의 후속 지원이 필요합니다.

▶ 순회교육 지원

학교나 학급이 인근에 없거나 학교로 등교하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순회학급 등에 배치되고 순회학급 선생님들이 시도를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 주 2회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개정안에는 일반 학교에도 순회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순회교육 시행을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공립 특수교육 기관 수준의 교육 제공 의무화 규정을 제안(안 제41조). 순회학급에 입급되어 있어도 현재보다 더 나은 양질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합니다.

▶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은 총 558명으로 대부분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음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 중 67.7%(378명)는 자체 장애 학생임

< 장애유형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지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계
특수 학교	4 (1.1)	1 (0.3)	70 (19.6)	265 (73.9)	0 (0.0)	11 (3.1)	2 (0.6)	0 (0.0)	5 (1.4)	0 (0.0)	358 (100.0)
특수 학급	0 (0.0)	4 (2.6)	47 (30.7)	84 (54.9)	2 (1.3)	0 (0.0)	4 (2.6)	1 (0.7)	4 (2.6)	7 (4.6)	153 (100.0)
일반 학급	0 (0.0)	1 (2.1)	2 (4.3)	29 (61.7)	1 (2.1)	0 (0.0)	2 (4.3)	0 (0.0)	11 (23.4)	1 (2.1)	47 (100.0)
합계	4 (0.7)	6 (1.1)	119 (21.6)	378 (67.7)	3 (0.5)	11 (2.0)	8 (1.5)	1 (0.2)	20 (3.6)	8 (1.5)	558 (100.0)

※ '19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92,958명

장애 학생을 위한 의료적 지원인은 학부모가 28.3%(197명)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보건교사 23.7%(165명), 활동보조인 16.4%(114명), 간호사 0.9%(6명) 순으로 나타남

<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의료 지원인('19. 7.) >

(단위: 명, %)

간호사	활동보조인	학부모	보건교사	기타*	계
6(0.9)	114(16.4)	197(28.3)	165(23.7)	214(30.7)	696(100.0)

* 기타 의료지원인: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사 또는 돌봄 교사, 학생 본인, 사회복무 요원, 자원봉사자 등

위와 같이 중도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의 요구를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의료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보호자가 5분대기조처럼 학교에 상주해서 필요할 때마다 의료적 지원을 해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거나 학생이 거주지 인근 학교로 등교하고자 하는 교육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순회학급 등에 배치되는 등 교육적 차별을 받아온 것이 이제까지의 현실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도중복장애를 신설(안 제28조),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안 제43조)

심리·행동 지원, 의사소통지원(안 제45조)

학교 차원에서 중도 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별도의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의료인 등을 배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고자 하였고, 보건교사 및 특수교사 등이 건강관리 지원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중과실 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안(안 제46조)

그동안 학교에서 교육적 차별을 받아온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에게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향후 의료법 등 학교보건법 등 개정의 과제가 있으나 특수교육법부터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현재 코로나 19시대를 보내면서 누구보다 힘들 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대다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일 등교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2교시 후 하교를 하는 등 매일 등교하면서 매일 등교가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척추도 훠고 비만과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짜증과 이상행동이 늘어갔습니다.

매일 등교한다고는 하나 아직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많은 학생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급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해서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장애 학생들 부모님들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저하에 대한 고민보다는 학생들의 사회성 부족, 소통문제를 더 많이 고민하시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학생들이 사회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해 사회구성원이 된다면 우리는 또 어떤 사회적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부모로서 서로 고민하는 지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치원은 4명에서 3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에서 5명, 고등학교는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1명을 감축하는 안을 제안되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적용하되 중도중복 장애 학생 배치학급에서는 학생 수를 감축하는 (안 제43조)을 적용해서 적극적인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재활 치료로 좋아지는 것은 손톱 자라는 것만큼 보여도 재활 치료를 못 해 근육이 무너지고 나빠지는 것은 순식간에 보였습니다.

기나긴 1년이라는 코로나 방학을 보내고 3월부터 매일 등교한다고는 하나 아직도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학교와 학생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또 생길지도 모르는 전염병 창궐 시 집안 생활이 길어져 도전적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지원이 필요한지, 부모 상담을 어찌해야 하는지, 원격수업이 무용지물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면 교육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매일 등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당장 급급해서 하는 설계가 아닌 1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수교육의 발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어 그동안 교육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위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학교라는 곳….

단지 문해 교육만 담겨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 비장애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작은 사회이며 소통하는 곳이며 학생들에게 어느 곳보다 재미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보다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5

**이제 우리에게는 장애학생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통합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경미 간사(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이제 우리에게는 장애학생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통합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조경미 간사(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이 모든 아이에서 장애학생이 배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장애학생이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제안해 주신 개정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동의합니다. 장애학생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조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이 방향을 기본전제로 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이 실현되고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이 강화되길 간절히 열망합니다. 저는 법이 담고 있는 수준 높은 원칙과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길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를 중심으로 고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물리적 통합을 넘은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필요합니다.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이 당연한 물리적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그 당시에는 부모들과 교사, 장애인단체가 투쟁으로 만들어 졌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그 당연히 주어져야 했었던 물리적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더 나은 통합교육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 정의에서 “통합학급”이란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또래의 일반학생과 함께 편성한 학급을 말한다. 라고 통합학급 정의가 규정된 점은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학교에는 특수학급 이외에도 통합학급에도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은 특수학급에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 있을 때 누가 지원할것인가? 누구의 책무인가?

우리는 장애학생이 원반 학급 소속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이 배치된 1-1반이 아이의 원래 소속이란 말이지요. 하지만, 실제 그러하다고 단언하여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사만이 하는 것인가요? 통합학급에 있는 시간동안 장애 학생에 대한 책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합니다.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일이 누구의 역할일까요? 만약 이것을 일반교사가 해야 한다면, 그래서 일반교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반교사에 대한 연수 및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특수교사가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있는 물리적 통합으로만 그 의미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제35조(통합교육) ② 제30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일반학교 교원 및 특수교육 교원의 협력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차별금지 예방, 제22조에 따른 장애인권교육 실시, 제16조에 따른 교원연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수정 및 평가 조정, 협력교수, 제45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 제35조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육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수교사와의 협력 근거를 마련한 자체에는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육 교원의 책무확대 및 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교육의 질은 각 학교의 교사와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제각각 다르다고 말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이 총 68,805명입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의 72%가 일반학교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의 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반교육 교원 및 특수교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16조(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5조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35조 5항에서는 특수학급 이외에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에 대한 통합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완전통합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이 있어야 교사를 배치할 수 있기에 이런 통합교육지원실을 설치하는 것도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의미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학급에서의 시간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 배치 기준 상향 등의 다양한 교사 배치 근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수학급에 배치된 52.744명(55.35)의 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수 감축 등의 내용으로 교사 충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으로는 여전히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통합학급에서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원에 효과적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학급당 교사배치 기준을 상향해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사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합교육의 주요한 정책변화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공통문항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 1)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2) 학교에서/또는 우리나라, 우리사회에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
- 3) 우리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특수학급에서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아이들이 온전히 교육받고 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왜 국어, 수학만 아이들 개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예체능 수업과 과학, 사회, 영어를 배울 기회는 왜 애초부터 고려될 수 없었을까요? 심지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일반학급에서의 수업보다 특수학급에서의 수업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내용을 들으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집에서는 없던 문제행동도 나오는 공간이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란 곳 한쪽에서는 지원근거와 인력의 부족으로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면 그 공간에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거나 혹은 나가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아동에 관한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규범이 주창하는 통합교육이란 단지 장애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합교육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통합교육을 위해 주요 교육제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있나요? 다시 봐도 이 법안에서 뺄 것은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만 보입니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중복장애학생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애학생이 특수교육을 더 잘 받기위해서는 관련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주요한 교육제도의 변화가 더 뚜렷하게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통합교육이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물리적 통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마저도 초등까지는 통합교육이 그나마 가능하지만,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배제되고 싶지 않아서, 제대로 지원받고 싶어서 특수학교로의 전학과 학교를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2가지 조항에 대해서만 의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일원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문제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자신을 지원하는 누군가 때려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같이 있는 누군가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12월 교육부가 실질적인 인권침해 예방 대책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장애학생인권보호 관련 조문

- 제13조 특수교육 실태조사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특수교육실태조사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실태조사는 2018년 여러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당시 교육부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계 강화하고자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실태조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대로 이 조사가 제안된 5년 주기로 진행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과 교원 수립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보다 별도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25조 연차 보고서는 매년 제출하는데, 이때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형식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연차보고서는 교육부가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제출 절차의 간소화 및 협행화를 위하여 제출 주체를 정부가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수정 조문 번호 수정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문 내 인용 조문 번호 수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6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함으로써 조사의 내실화를 피하고자 함 또한 조사 실시주기를 3년이 아닌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과연동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실제로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관련 근거 제시 필요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구 삭제

현행 법률 (2021.3.23. 개정 사항 반영)	개정안	개정 사유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실태조사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특수교육실태조사를 통해 3년마다 인권 보호 및 신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이 규정은 과잉입법으로 판되어 특수교육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 “침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전반을 조사할 수 있도록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라는 포괄적인 개념 제시

○ 개별화교육 관련 조문

- 제22조 (개별화교육) 관련하여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문의도 많고, 민원도 많은 내용이 개별화 관련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학기초에 교사와 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다면 학교에서 형식적인 절차와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실제 의미있는 역할과 내용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이든 개별화교육지원계획이든,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부모에게도 교육하고, 교사들에게도 교원 연수 때 중요하게 교육내용으로 다뤄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 교사 역량에 따라 차이나는 개별화교육지원계획 수립 말고 질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행되었으면 합니다.



토론 6

장애인학생을 위한 발돋움: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 개정에 관하여

이현영 운영위원(장애인학생인권네트워크)

장애대학생을 위한 발돋움: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 개정에 관하여

이현영 운영위원(장애인학생인권네트워크)

I. 들어가며

코로나19로 원격강의(비대면강의)가 실시되며 장애인 학습권 문제가 조명받았다. 예컨대 강의 영상에 자막지원 혹은 수어통역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어통역이 지원되어도 통역사 인력 부족으로 타 학생과 동시에 통역을 받아야 해 강의 수강 및 변경에 제한이 있기도 하였고, 일부 대학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웹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 문자 변환(TTS)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¹⁾.

그러나 장애인 학습권 문제의 원인은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다. 그간의 부조리가 이제야 주목받기 시작한 것일 뿐이다. 한 학생은 대학 생활 동안 속기 지원도, 수어통역사도 수업 방해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채 대부분의 과목에서 낙제 후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²⁾. 장애인 학습권의 보장을 교수 개개인의 재량에 맡겨버리는 상황이 갖다는 점은 주요 문제 원인 중 하나이다³⁾. 장애학생지원센터 또한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교내에서도 권한이 미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막 지원을 실행하려 했으나 다른 부서에서 협력해주지 않아 장애학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⁴⁾. 따라서 본고는 장애인 학습권 문제 중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그 요인과 실태를 짚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
- 1) 이명환, "출석 불렀는데 몰랐어요"… 장애대학생 학습권은 어디로?, 머니S, 2020.11.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00616542>
 - 2) 이가연, 코로나19로 시작된 대학 온라인 강의, 학습권 침해받는 '농학생들', 비마이너, 2020.03.20.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0>
 - 3) 박승원, 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비마이너, 2020.06.0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6>
 - 4) 강혜민, '줌'이 편하다고? 장애학생 배제돼도 속수무책인 대학, 비마이너, 2020.09.2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8>

II. 문제 상황

1. 고등교육법 관련

1995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제도가 시작되면서, 장애인에게 대학 입학의 문은 점차 넓어져 오는 것으로 보였다.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한 일반대학 입학생 수는 2010학년도 75개교 601명에서 2020학년도 93개교 898명으로 증가했다.⁵⁾ 그러나 이 같은 단순 증가추세만으로는 장애인 학습권 관련 현실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 간 대학진학률의 차이는 여전히 분명하다. 지난해 기준 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17%인데, 전체 대학 진학률 72.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⁶⁾. 둘째, 현재 장애인 특별전형의 시행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선발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법규는 부재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장애인 특별전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선발인원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부재하여 장애인 특별전형의 실질적 실행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 이러한 공백으로 인해, 2020년 기준 191개 일반대학교 중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1명 이상 입학한 학교는 93개교에 불과하다⁷⁾.

2. 특수교육법 관련

2019년 기준 총 9,653명에 달할 만큼 많은 장애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나⁸⁾, 이들은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1) 장애인의 고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편의지원을 실시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2) 장애인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장애 학생 관련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⁹⁾. 지원의 핵심기관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인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생활에 관한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관련 지원의 제공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을 근거로 현재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구. 학습도우미)를 통해 이동

5) 교육부, 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96.

6) 노상우, 장애인, 중졸 이하가 절반 이상…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쿠키뉴스, 2021. 04. 2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00208>

7) 교육부, 2020, 2020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96.

8) 남궁양숙,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부, 2020.06.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0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9) 교육부, 2021,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2.

지원 등의 대학 내 생활 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의 학습 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며 학생 개인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 전국 348개 대학 중 평가에 참여한 343개 대학을 살펴보면, '개선요망'이 27.0%(114개)로 나타났다¹⁰⁾. 또한, 학내이동, 속기, 수어통역 등 편의지원을 받는 학생(2017년 971명, 2018년 783명, 2019년 650명)과 '도우미'로 불리는 지원인력(2017년 763명, 2018년 567명, 2019년 532명)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¹¹⁾.

특수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 혹은 부서를 설치해야 하고 장애학생지원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계획 및 교육권 침해 관련 청구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동반되는 것이 필수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행 법은 부족하다. 장애인권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이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아도 문제가 없고,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대학은 지원센터 대신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겸임 인원이 많아 장애 학생 지원의 전문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14년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330명 중 전담 직원은 93명(28.2%)이었고, 나머지 237명(71.8%)은 타 업무와 겸임하고 있었다¹²⁾. 일부 대학에서는 자막과 화면해설 등 학습 지원 제공을 교수 개개인의 재량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게 떠넘기거나, 학내 다른 부서가 협력해주지 않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¹³⁾. 더불어,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이미 마련된 제도를 시행하는 역할에 머무를 뿐 능동적인 정책 개발이나 요구를 하기 어려운 지위이며, 대학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관련 지원방안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¹⁴⁾.

교육지원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 특수교육법 제29조에서는 각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전국 296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에서 특별지원위원회는 연간 1.02회에 그쳤으며 88곳(29.7%)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

10) 교육부, 2021,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1.

11) 국립평생교육원, 교육부, 2020,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서 설명회 안내자료, 8.

12) 갈홍식,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부족...제도적 대안 마련해야, 비마이너, 2015.04.0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2>

13) 박승원, 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비마이너, 2020.06.0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6>

14) 이명환, "출석 불렀는데 몰랐어요"… 장애대학생 학습권은 어디로?, 머니S, 2020.11.1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207528046511>

고, 2년간 회의가 전무한 대학도 61곳(20.6%)일 만큼 해당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인 상태다¹⁵⁾. 또한, 주로 교수와 교직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장애 관련 이해와 경험이 부족하고 학생, 학부모, 전문가의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¹⁶⁾.

III.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함의

1. 사회통합전형 운영 관련 선발비율의 명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에서 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명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와 같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는 장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듯이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서 장애인 진학률은 매우 낮다. 현행법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사회통합전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선발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어 실질적으로 대학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다. 특히 최근 진주교대 장애인 학생 입학성적 조작 사건에서도 장애 학생 선발에 대한 대학의 부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안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법안 통과 후 대학들의 더욱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특수교육법 개정안 중 주요사항으로 제33조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되었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장애유형별 고등 교육 지원 지침 개발, 장애학생의 복지 및 취업 지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업무담당자의 연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그 밖에 고등교육센터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앞서 살펴듯, 장애 학생은 어렵게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교육권의 침해를 겪고 있다. 최근 조명된 온라인 학습 관련 문제 이외에도 점자교재 비용에 대한 자부담, 이동 지원 차량이

15) 이슬기, 장애학생 위한 대학 특별지원위 ‘있으나 마나’, 에이블뉴스, 2014.10.2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41023092919601982>

16) 김형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노동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비마이너, 2015.03.2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1>

나 도우미 제도의 운영 미흡, 재원 한정으로 인한 속기 지원의 어려움으로 고비용의 음성-문자변환기 기 사용 등 장애 학생 지원 실태는 열악한 상황이었다¹⁷⁾. 이에 따라서 장애 학생의 교육의 질은 타 학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의 장애 학생 취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장애 학생 취업 지원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장애 학생 지원 전문인력의 부재(15%)와 장애 학생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부재(13%)등의 이유가 꼽히기도 하였다¹⁸⁾.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교육지원 센터는 장애 대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꼭 필요한 디딤돌이며,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30조 2항) 교육활동 관련 지원의 폭을 넓힌(31조) 부분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3. 장애학생지원센터 실효성 증진

장애 학생 지원 과정에서도 또 다른 차별의 문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장애 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에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둘 의무가 부여되고, 이외에는 지원부서 혹은 전담직원만 두면 된다. 그러나 특히 펜데믹 시대에서 장애 학생 지원의 한계는 여지없이 나타났다. 앞서 살폈듯이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전담직원이 겸임을 하여 지원의 질이 낮은 문제부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한 명의 실무진이 많은 학생을 담당하게 되는 등 현실적인 인력 부족 문제 등은 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본 개정안은 제30조에서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지원부서’로 변경하고, 장애인식교육 실시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의 전문성에 관한 자격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아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타 부서와의 수평적 관계와 독자적 지위 확보, 인력 관련 전문성 및 안정성 향상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소속부처가 교무처, 학생처 등 각 학교 구조마다 다르고, 센터 일을 행정직원이 겸직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전 담직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처우가 낮은 경우가 많고, 미비한 학습 기자재 구비 실태나 불충분한 인력 수급 등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¹⁹⁾. 본 개정안이 변화의 첫걸음으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
- 17) 이슬기, 장벽 높은 대학, 1만 장애대학생 현주소, 에이블뉴스, 2019.09.2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90916140510998317>
- 18) 유대근, 서울신문, 대학 문턱 넘어도 취업 문턱 못 넘어…장애 학생의 눈물, 2018.0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93088>
- 19) 김선희, 2018, 청각장애인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8), 280.

4.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장애학생당사자의 참여 및 전문성 강화

현행법상 대학교는 장애 학생 지원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앞서 살폈듯이 현장에서 특별지원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거의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그 구성원 또한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장애인권 관련 전문성이 낮은 이들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교 본부 내 회의체로서 장애 학생의 지원을 논의하는 자리가 존재하는지조차 장애당사자들은 알지 못하고, 결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질적 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개정안 제29조에 따르면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장애 학생의 대표성을 높이고, 결국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할 초석일 것이다.

IV. 법안의 한계

본 개정안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특수교육법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다수 존재한다. 2018년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를 발간하고 특수교육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총망라하여 발표한 적 있으나, 현재까지 변화는 미미하다. 당시 해당 보고서에서 검토된 대학교육 관련 주요 문제점 중 아직 개선되지 않은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²⁰⁾

제4조 차별금지 조항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규제대상에 관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균형을 맞출 것과 특수교육기관의 실정이 반영된 대상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특히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규정을 신설할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제6조 사립학교의 위탁 조항에서는 위탁 취소, 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조항에서는 각 학교 특성을 고려한 지원 내용의 특성화 등 조항의 구체화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제29조부터 제32조 까지의 고등교육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평생교육법으로의 이관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으로 이관될 것이 제안되었다. 이는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이에 대해서만 그 지원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지만,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은 장애인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지이다. 또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장애인 재학생 10명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모든 학교로 확대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 장애학생지

20) 김상섭 외 12인, 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29-249.

원센터의 역할 및 인력 배치 근거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 심사청구 및 별 칙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청구자에 대한 조력인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 보호자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특수교육법이 안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무겁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일정 부분 아쉬움을 남긴다. 그럼에도 본 개정안은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명시와 함께 장애 학생 학습권 관련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개선 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제시하였고,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자격요건 수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자 하였으며, 대학의 장에 대한 의무와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등 대학교육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총괄적 지원이 가능한 전담기관인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함으로써 장애대학생 교육권 보장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이는 장애대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특수교육법 변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V. 맺으며

고등교육 현장에서 장애인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고질적 문제이다. 장애인 고등교육과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으로는 대학들의 지원근거로 작용하는 법률 및 제도적 지원요인의 구체화와 명시화, 대학 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학업 지원 방식으로서 각종 보조기기와 인적 서비스 등의 제공, 기숙사와 같은 시설이용의 보장이나 동아리 등 각종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 등을 포함하는 생활지원, 취업 및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된다²¹⁾. 그러나 장애 학생 지원의 중심축을 맡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담당 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단기 계약직 방식으로 인한 업무 연계성 부재, 자치적 의사결정권한이 없어 상부 조직의 장애이해도가 낮은 경우 원만한 업무 수행 불가, 부족한 규모로 인해 불충분한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각종 규정 미비에 의한 운영의 어려움, 타 부서와의 업무 협조 체제가 공고하지 않음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²²⁾.

이러한 현실에서 고등교육법 및 특수교육법 관련 개정안들은 변화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좁게는 교수-학습권 보장을 포함한 장애 대학생들의 원활한 대학 생활에, 넓게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사회적 차원의 인적 지원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 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책무의 명시 및 구체화가 완성되기를 바라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

21) 이경준, 2008,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 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11.

22) 김동일, 정소라, 2015, 장애인 고등교육의 쟁점과 전망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7-12.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갈홍식,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부족...제도적 대안 마련해야, 비마이너, 2015.04.03.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2>
- 강혜민, ‘줌’이 편하다고? 장애학생 배제돼도 속수무책인 대학, 비마이너, 2020.09.2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8>
- 김형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노동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비마이너, 2015.03.25.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8121>
- 남궁양숙, 장애대학생 관련 정보, 이제 한곳에서 볼 수 있어요, 교육부, 2020.06.29.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04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노상우, 장애인, 중졸 이하가 절반 이상…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쿠키뉴스, 2021. 04. 21.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00208>
- 박승원, 온라인 강의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 대학생들 ‘학습권 보장’ 촉구, 비마이너, 2020.06.04.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46>
- 유대근, 서울신문, 대학 문턱 넘어도 취업 문턱 못 넘어…장애 학생의 눈물, 2018.0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93088>
- 이가연, 코로나19로 시작된 대학 온라인 강의, 학습권 침해받는 ‘농학생들’, 비마이너, 2020.03.20.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490>
- 이명환, "출석 불렀는데 몰랐어요"… 장애대학생 학습권은 어디로?, 머니S, 2020.11.1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10207528046511>
- 이슬기, 장벽 높은 대학, 1만 장애대학생 현주소, 에이블뉴스, 2019.09.27.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90916140510998317>
- 이슬기, 장애학생 위한 대학 특별지원위 ‘있으나 마나’, 에이블뉴스, 2014.10.23.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141023092919601982>

〈논문 및 연구보고서〉

- 교육부, 2020,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 교육부, 2021,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 교육부, 2021,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평생교육원, 교육부, 2020,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서 설명회 안내자료.
- 김동일, 정소라, 2015, 장애인 고등교육의 쟁점과 전망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을 중심으로, 장애인고등교육연구, 1(1).
- 김상섭 외 12인, 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
육원.
- 김선희, 2018, 청각장애인 대학생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용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융합학
회논문지, 9(8).
- 이경준, 2008, 장애인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정책변화와 지원요인 탐색연구, 사회과학연구,
24(3).



토론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방안에 대한 토론문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¹⁾

1. 들어가며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기초연구 당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그 내용과 이후의 연구, 고민들이 이어져 개정안까지 마련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안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2.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이번에 제시된 개정안은 장애학생 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인권친화적 특수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 통합교육 실현 환경 조성,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특수교육 지원 기반 구축 등 6가지로 제시되었습니다.

위 방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특수교육법이 장애학생의 통합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개정방향을 “완전한 통합교육”으로 설정하고 주요 개정과제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줄여나가고,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학교생활하는 것을 전제로 개별화교육 강화와 인적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더 강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정부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수준에서의통합적인교육제도를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1) 사단법인 두루 상근 변호사,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사무국장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조치가 제공된다.

관련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우리 정부에 최종견해를 제시하면서, “통합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일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괄적 교육을 위한 통합교육을 위해 점진적으로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의 한계로 인해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교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입장입니다(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

포괄적 또는 포용적 교육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비장애인인 있는 시설에 장애인을 배정하는 통합교육과 구분되는 용어로 설명됩니다. 특수학교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학교에 배치되지만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이 주되게 진행되는 것도 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이러한 방향에 맞게, 법명도 “장애인교육법” 또는 “장애인 통합교육법”이라고 바꾸어 통합교육을 물리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포괄적/포용적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3. 개정안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

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개정안에는 현재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과제에 따라 다양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민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서 다시 제안드립니다. 3)

2)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 혜민이의 이야기를 통해 통합교육의 실패원인을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분리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염수정, “통합교육, 그 이후: 학교에서의 분리와 통합에 대한 탈관습적 접근”, 한국장애인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1~31쪽 참고

3) 당초 우선제안되었던 안은 특수교육기관에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포함시켜 장애유아들이 어느 곳을 선택하던지 동등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위 개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개정 대상 조항	개정안	제안 사유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린이집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의무교육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신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위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6조 내지 제28조가 적용되고, 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와 동등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와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어린이집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포함하여 위 특수교육대상자도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재 제시된 개정안에서는 순회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장애유아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순회교육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장애유아들에게 동등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교육과 돌봄이 모두 제공하는 이중적 기능을 하는 곳임을 감안하여 위 제안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노력

통합교육을 고민하는 단위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통합담임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⁴⁾ 특수교사 만으로는 일반학교에서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이루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반담임교사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교사 중 20학점 이상의 연수나 대학원에서 통합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을 받고 통합반에서 일반교사들과 함께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진로 및 직업교육이 연계 되지 않아 학생의 흥미, 적성과 관련하여 일관성 있는 진로직업교육 계획 작성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중학교 3학년부터 “개별화전환교육계획”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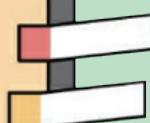
4. 나가며

저는 이번 개정방향과 교육현장에서 학생, 부모, 교육(서비스) 제공자가 겪는 고충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현재 교육적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유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완전한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장애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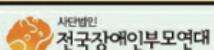
4) 장애인교육아울다, 7차 대선 대비 장애인교육 공약 요구안 개발 공개회의 중등분과 자료집(2021. 6. 18.), 5쪽

5) 위 장애인교육아울다, 8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 약자의 눈